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의정서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자로서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당사자(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및

유럽연합은

(이) 하 “양 당사자”라 한다)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2010년 10월 6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되어 왔으며,

크로아티아공화국(이하 “크로아티아”라 한다)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조약(이하 “가입조약”이라 한다)이 브뤼셀에서 2011년 12월 9일에 서명되고 2013년 7월 1일에 발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절

양 당사자

제1조

크로아티아는 이로써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제2조

크로아티아는 협정의 당사자 목록에 추가된다.

## 제2절

### 원산지 규정

#### 제3조

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 규정 의정서”라 한다)의 부속서3은 이로써 이 의정서의 부속서1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된다.

#### 제4조

1. 이 협정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크로아티아로 수출되거나 크로아티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협정의 원산지 규정 의정서를 준수하고, 2013년 7월 1일에 운송 중이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저장 중이었거나 또는 대한민국이나 크로아티아의 자유지역에 있을 경우 그러한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2. 특혜대우는 그러한 경우에 2013년 7월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된다.

제3절

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 상거래

제5조

협정의 부속서 7-가-1은 이 의정서의 부속서2의 규정으로 대체된다.

제6조

협정의 부속서 7-가-2는 이 의정서의 부속서3의 규정으로 대체된다.

제7조

협정의 부속서 7-가-3은 이 의정서의 부속서4의 규정으로 대체된다.

제8조

협정의 부속서 7-다는 이 의정서의 부속서5의 규정으로 대체된다.

#### 제4절

##### 일반 및 최종규정

#### 제9조

1. 이 의정서는 양 당사자가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의 다음 첫째 달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유효하게 적용된다.
3. 의정서가 발효될 때까지, 양 당사자는 유럽연합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잠정 적용 통보를 받은 날 중 늦은 날의 10일 후부터 잠정적으로 의정서를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4. 이 조에 따른 통보는 유럽연합 이사회와 사무총장과 대한민국 외교부 또는 그 승계기관에 송부된다.

#### 제10조

이 의정서는 불가리아어, 체코어, 크로아티아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한국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유럽연합은 협정의 크로아티아어본을 대한민국에 전달한다. 이 의정서의 발효를 조건으로 크로아티아어본은 이 의정서의 현재 언어로 작성된 것과 같은 조건의 정본이다. 협정의 제15.16조는 이에 따라 수정된다.

#### 제11조

이 의정서와 이 의정서의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원산지 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sup>(1)</sup>)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sup>(2)</sup>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불가리아어 본

Износителят на продуктите, обхванати от този документ (митническо разрешение № ...<sup>(1)</sup>) декларира, че освен където ясно е отбелязано друго, тези продукти са с ... преференциален произход<sup>(2)</sup>.

### 스페인어 본

El exportador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documento (autorización aduanera nº ...<sup>(1)</sup>) declara que, salvo indicación en sentido contrario, estos productos gozan de un origen preferencial ...<sup>(2)</sup>.

### 체코어 본

Vývozce výrobků uvedených v tomto dokumentu (číslo povolení ...<sup>(1)</sup>) prohlašuje, že kromě zřetelně označených mají tyto výrobky preferenční původ v ...<sup>(2)</sup>.

## 덴마크어 본

Eksportøren af varer, der er omfattet af nærværende dokument, (toldmyndighedernes tilladelse nr. ...<sup>(1)</sup>), erklærer, at varerne, medmindre andet tydeligt er angivet, har præferenceopri  
ndelse i ...<sup>(2)</sup>.

## 독일어 본

Der Ausführer (Ermächtigter Ausführer; Bewilligungs-Nr. ...<sup>(1)</sup>) der Waren, auf die sich dieses Handelspapier bezieht, erklärt, dass diese Waren, soweit nicht anderes angegeben, präferenzbegünstigte ...<sup>(2)</sup> Ursprungswaren sind.

## 에스토니아어 본

Käesoleva dokumendiga hõlmatud toodete eksportija (tolli kinnitus nr. ...<sup>(1)</sup>) deklareerib, et need tooted on ...<sup>(2)</sup> soodusväritoluga, välja arvatum juhul kui on selgelt näidatud teisiti.

## 그리스어 본

Ο εξαγωγέας των προϊόντων που καλύπτονται από το παρόν έγγραφο (άδεια τελωνείου υπ' αριθ. ...<sup>(1)</sup>) δηλώνει ότι, εκτός εάν δηλώνεται σαφώς άλλως, τα προϊόντα αυτά είναι προτιμητικής καταγωγής ...<sup>(2)</sup>.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sup>(1)</sup>)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sup>(2)</sup> preferential origin.

## 프랑스어 본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autorisation douanière n° ...<sup>(1)</sup>) dé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éférentielle ...<sup>(2)</sup>.

## 크로아티아어 본

Izvoznik proizvoda obuhvaćenih ovom ispravom (carinsko ovlaštenje br. ....<sup>(1)</sup>) izjavljuje da su, osim ako je drugčije izričito navedeno, ovi proizvodi ....<sup>(2)</sup> preferencijalnog podrijetla.

## 이탈리아어 본

L'esportatore delle merci contemplate nel presente documento (autorizzazione doganale n. ...<sup>(1)</sup>) dichiara che, salvo indicazione contraria, le merci sono di origine preferenziale ...<sup>(2)</sup>.

## 라트비아어 본

To produktu eksportētājs, kuri ietverti šajā dokumentā (muitas atļauja Nr. ...<sup>(1)</sup>), deklarē, ka, izņemot tur, kur ir citādi skaidri noteikts, šiem produktiem ir preferenciāla izcelsme ...<sup>(2)</sup>.

## 리투아니아어 본

Šiame dokumente išvardytų prekių eksportuotojas (muitinės liudijimo Nr. ...<sup>(1)</sup>) deklaruoją, kad, jeigu kitaip nenurodyta, tai yra ...<sup>(2)</sup> preferencinės kilmės prekės.

## 헝가리어 본

A jelen okmányban szereplő áruk exportőre (vámfelhatalmazási szám: ...<sup>(1)</sup>) kijelentem, hogy eltérő egyértelmű jelzés hiányában az áruk preferenciális ...<sup>(2)</sup> származásúak.

## 몰타어 본

L-esportatur tal-prodotti koperti b'dan id-dokument (awtorizzazzjoni tad-dwana nru. ...<sup>(1)</sup>) jiddikjara li, ħlief fejn indikat b'mod ċar li mhux hekk, dawn il-prodotti huma ta' origini preferenzjali ...<sup>(2)</sup>.

## 네덜란드어 본

De exporteur van de goederen waarop dit document van toepassing is (douanevergunning nr. ...<sup>(1)</sup>), verklaart dat, behoudens uitdrukkelijke andersluidende vermelding, deze goederen van preferentiële ... oorsprong zijn <sup>(2)</sup>.

## 폴란드어 본

Eksporter produktów objętych tym dokumentem (upoważnienie władz celnych nr ...<sup>(1)</sup>) deklaruje, że z wyjątkiem gdzie jest to wyraźnie określone, produkty te mają ...<sup>(2)</sup> preferencyjne pochodzenie.

## 포르투갈어 본

O abaixo-assinado, exportador dos produtos abrangidos pelo presente documento (autorização aduaneira nº. ...<sup>(1)</sup>), declara que, salvo indicação expressa em contrário, estes produtos são de origem preferencial ...<sup>(2)</sup>.

## 루마니아어 본

Exportatorul produselor ce fac obiectul acestui document (autorizația vamală nr. ...<sup>(1)</sup>) declară că, exceptând cazul în care în mod expres este indicat altfel, aceste produse sunt de origine preferențială ...<sup>(2)</sup>.

## 슬로베니아어 본

Izvoznik blaga, zajetega s tem dokumentom (pooblastilo carinskih organov št ...<sup>(1)</sup>) izjavlja, da, razen če ni drugače jasno navedeno, ima to blago preferencialno ...<sup>(2)</sup> poreklo.

## 슬로바키아어 본

Vývozca výrobkov uvedených v tomto dokumente (číslo povolenia ...<sup>(1)</sup>) vyhlasuje, že okrem zreteľne označených, majú tieto výrobky preferenčný pôvod v ...<sup>(2)</sup>.

## 핀란드어 본

Tässä asiakirjassa mainittujen tuotteiden viejä (tullin lupa n:o ...<sup>(1)</sup>) ilmoittaa, että nämä tuo teet ovat, ellei toisin ole selvästi merkitty, etuuskohteluun oikeutettuja ... alkuperätuotteita <sup>(2)</sup>.

## 스웨덴어 본

Exportören av de varor som omfattas av detta dokument (tullmyndighetens tillstånd nr. ...<sup>(1)</sup>) försäkrar att dessa varor, om inte annat tydligt markerats, har förmånsberättigande ... ursprung <sup>(2)</sup>.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sup>1</sup>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팔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sup>2</sup>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가 "CM"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sup>3</sup>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sup>4</sup>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유럽연합 당사자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

(국경 간 서비스 공급)

1. 아래의 약속 목록은 제7.7조에 따라 자유화된 서비스 분야, 그리고 유보에 의해 해당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을 표시한다. 아래의 목록은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가. 유럽연합 당사자가 약속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와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 그리고

나. 적용 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아래 목록에 언급되지 아니한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서의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은 약속되지 아니한다.

2.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확인함에 있어,

가. CPC란 제7.25조에 대한 각주 27에 언급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그리고

나. CPC 개정판 1.0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77, 1998년 발간 CPC 개정판 1.0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3.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과 절차에 관련된 조치가 제7.5조 및 제7.6조의 의미에서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목록은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요구,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인정 획득 요구,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요구)는 비록 기재되지 아니하더라도, 대한 민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아래의 목록은 일정한 서비스 분야 및 하위 분야에서 제7.4조제3항1)목의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실행가능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며, 설립에 관한 약속 목록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공공독점 및 배타적 권리의 존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5. 제7.1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목록은 당사자가 부여하는 보조금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아래의 목록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직접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7. 다음 약어는 아래의 목록에서 사용된다.

오 : 오스트리아

벨 : 벨기아

불 : 불가리아

사 : 사이프러스

체 : 체코공화국

독 : 독일

덴 : 덴마크

유 : 회원국 전부를 포함한 유럽연합

서 : 스페인

에 : 에스토니아

핀 : 핀란드

프 : 프랑스

그 : 그리스

크 : 크로아티아

헝 : 헝가리

아 : 아일랜드

이 : 이탈리아

라 : 라트비아

리 : 리투아니아

룩 : 룩셈부르크

몰 : 몰타

네 : 네덜란드

폴 : 폴란드

포 : 포르투갈

루 : 루마니아

슬 : 슬로바키아

베 : 슬로베니아

스 : 스웨덴

영 : 영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모든 분야	<p><b>부동산</b></p> <p>공급형태 1 및 2</p> <p><b>오, 불, 사, 체, 텐, 그, 편, 형, 아, 이, 리, 몰, 폴, 루, 베, 슬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b> : 제한 없음.</p> <p><b>오</b> : 외국의 자연인과 법인에 의한 부동산의 임대 또는 리스뿐 아니라 취득 또는 구매는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이해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검토할 권한 있는 지역 당국(<i>Länder</i>)의 인가를 요구함.</p> <p><b>불</b> : 외국 법인과 해외에 영주하는 외국 시민은 재무부의 허가를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 및 부동산의 제한된 재산권<sup>1</sup>을 취득할 수 있음. 그 허가 요건은 불가리아에 이미 투자한 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함.</p> <p>해외에 영주하는 외국 시민과 외국 법인 및 외국인 참여가 결정을 채택하는데 과반수를 확보하거나 결정의 채택을 저지할 수 있는 회사는 허가를 조건으로 내각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한 지역에서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p> <p><b>사</b> : 약속 안함.</p> <p><b>체</b> : 외국의 자연인 및 법적 실체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 외국의 실체는 체코의 법적 실체의 설립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의 실체의 토지 취득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p> <p><b>텐</b> : 비거주 물리적 및 법적 실체의 부동산 구매에 제한이 있음. 외국의 물리적 및 법적 실체에 의한 농업용 부동산 구매에 제한이 있음.</p>

<sup>1</sup> 불가리아 재산법은 다음의 제한된 재산권을 인정함: 사용권, 건축권, 상부구조물 설치권과 지역권 및 채취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그 : 법 제1892/90에 따라, 시민이 국경 근접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함. 행정적 관행에 따라, 허가는 직접투자에 용이하게 부여됨.</p> <p>핀 : (올란드(Åland) 제도): 올란드(Å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제도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올란드(Åland) 제도의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권리가 제한됨. 올란드(Å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그 제도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설립 및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가 제한됨.</p> <p>헝 : 외국의 투자자에 의한 토지 및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음<sup>2</sup>.</p> <p>아 : 국내 또는 외국 회사 또는 외국 국민이 아일랜드 토지에 대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함. 그러한 토지가 (농업 관련 산업이 아닌) 산업용인 경우 “기업, 무역 및 고용부”로부터의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조건으로 이 요건이 면제됨. 이 법은 도시 경계 내의 토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함.</p> <p>이 : 외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한 부동산 구매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p> <p>리 : 토지 취득에 대하여 약속 안함<sup>3</sup>.</p> <p>몰 : 부동산 재산권 취득에 관한 몰타 법 및 규정의 요건이 계속 적용됨.</p> <p>풀 : 외국인(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부동산 취득에는 허가가 요구됨. 국가 소유 재산의 취득(즉, 민영화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약속 안함.</p> <p>루 : 루마니아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본부를 두지 아니하고 있는 법인뿐 아니라 루마니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은 생전행위를 통하여 어떤 종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음.</p>

<sup>2</sup>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sup>3</sup>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b>베 :</b> 외국 자본 참여로 슬로베니아 내에 설립된 법인은 슬로베니아 영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인이 슬로베니아에 설립한 지점<sup>4</sup>은 그들이 설립된 목적에 따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만을 취득할 수 있음. 다른 쪽 당사자의 법인 또는 국민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속해있는 회사가 국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특별 허가를 조건으로 함.</p> <p><b>슬 :</b> 외국인인 물리적 및 법적 실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함. 외국인인 실체는 슬로바키아인인 법적 실체의 설립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토지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

<sup>4</sup> 상업회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내에 설립된 지점은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나, 활동과 관련하여 지점에 대한 대우는 GATS 제 28 조 제사항에 따른 자회사의 그것과 동일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p><b>a) 법률서비스</b>            (CPC 861<sup>5</sup>)            공증, “집행관 업무(<i>huissiers de justice</i>)” 또는 그 밖의 “공무원 업무(<i>officiers publics et ministeriels</i>)”와 같이 공공의 기능을 위임받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법률자문,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는 제외</p>	<p><b>공급형태 1 및 2</b></p> <p><b>오, 사, 서, 그, 리, 몰, 슬 :</b> 국내(유럽연합 및 회원국)법 업무를 위하여 요구되는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국적요건을 조건으로 함.</p> <p><b>벨, 펜 :</b> 법률대리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거주요건과 함께 국적요건을 조건으로 함. 벨기에에서 비형사사건에서 “최고법원(<i>Cour de cassation</i>)”에서 대리하는 데에는 쿼터가 적용됨.</p> <p><b>불 :</b> 대한민국 변호사는 상호주의 및 불가리아 변호사와의 협력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률대리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음. 법률조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상시 거주가 요구됨.</p> <p><b>프 :</b> “최고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e la Cour de Cassation</i>)”와 “현법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u Conseil d'Etat</i>)”의 직종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은 쿼터와 국적 요건을 조건으로 함.</p>

<sup>5</sup> 법률자문서비스, 법률대리서비스, 법적 중재 및 화해/조정 서비스, 그리고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를 포함함.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국제공법, 유럽연합법 및 서비스공급자 또는 그 소속직원이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관할 지역의 법과 관련하여서만 인가되고 다른 서비스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면허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함. 국제공법 및 외국법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이러한 면허 요건 및 절차는 특히 국내 윤리규정의 준수, (활동국 직명에 대한 인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원자격국 직명의 사용, 보험 요건,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단순 등록 또는 적성검사를 통한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간이 가입, 활동국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주소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유럽연합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그러한 변호사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의 관련 회원국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법정 및 기타 유럽연합 측의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및 국내 절차법 사무 처리를 수반하기 때문임.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경우 변호사협회에 완전히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 변호사는, 그 변호사가 활동하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국민 또는 그 국가에 속하는 당사자를 민사절차에서 대리하는 것이 허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형 :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거주요건과 함께 국적요건을 조건으로 함. 외국 변호사에 대하여 법적 활동의 범위는 법률자문의 제공에 한정됨.</p> <p>라 : 형사 절차에서의 대리권이 유보되고 서약한 사무변호사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p> <p>덴 : 법률자문서비스의 마케팅은 덴마크 자격증을 지닌 변호사와 덴마크에 등록된 법무회사(로펌)에 유보됨. 덴마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덴마크 법률시험에 요구됨.</p> <p>스 : 스웨덴의 직명 “advokat”的 사용만을 위하여 필요한 변호사협회에의 가입은 거주요건을 조건으로 함.</p> <p>공급형태 1</p> <p>크 : 크로아티아 법의 적용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b) 1. 회계 및 회계장부정리 서비스 (감사서비스를 제외한 CPC 86212, CPC 86213, CPC 86219 및 CPC 86220)</p>	<p>공급형태 1</p> <p>프, 형, 이, 몰, 루, 베 : 약속 안함.</p> <p>오 :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하여 국적요건이 있음.</p> <p>공급형태 2</p> <p>제한 없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2. 감사서비스 (회계서비스를 제외한 CPC 86211 및 86212)	<p><b>공급형태 1</b></p> <p>벨, 불, 사, 독, 서, 편, 프, 그, 형, 아, 이, 륙, 몰, 네, 포, 류, 베, 영 : 약속 안함.</p> <p>오 :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하여, 그리고 특정한 오스트리아법(예를 들어 합자주식회사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에 규정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적요건이 있음.</p> <p>크 : 외국감사회사는 그들이 지점을 설립한 크로아티아 영역에서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p> <p>스 : 스웨덴에서 승인된 감사인만이 일정한 법적 실체, 특히 모든 유한회사에서 법적 감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한 감사인들만이 (공식적 목적으로) 자격있는 감사를 행하는 회사에서 주주가 되거나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음. 승인을 위하여 거주가 요구됨.</p> <p>리 : 감사 보고서는 리투아니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감사인과 함께 작성하여야 함.</p> <p><b>공급형태 2</b></p> <p>제한 없음.</p>
c) 세무자문서비스 (CPC 863 <sup>6</sup> )	<p><b>공급형태 1</b></p> <p>오 :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하여 국적요건이 있음.</p> <p>사 : 세무사는 재무부에 의해 적절하게 인가되어야 함.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사용되는 기준은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허가 부여의 그것과 유사함. 이 기준이 하위 분야에 적용될 경우 그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이 항상 고려됨.</p> <p>불, 몰, 류, 베 : 약속 안함.</p> <p><b>공급형태 2</b></p> <p>제한 없음.</p>

<sup>6</sup> 1.A.a) 법률서비스에 기재된 세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건축설계서비스 그리고 e)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1 및 CPC 8674)	<p><b>공급형태 1</b></p> <p>오 : 계획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벨, 불, 사, 그, 이, 물, 폴, 포, 베 : 약속 안함.</p> <p>독 : 외국에서 수행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요금 및 수임료에 대한 국내규칙이 적용됨.</p> <p>헝, 루 : 경관건축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크 : 자연인과 법인은 크로아티아 건축사협회의 허가 하에 건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도시계획에 대하여 약속안함.</p> <p><b>공급형태 2</b></p> <p>제한 없음.</p>
f)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g)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및 CPC 8673)	<p><b>공급형태 1</b></p> <p>오, 베 : 순수한 계획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불, 사, 그, 이, 물, 포 : 약속 안함.</p> <p>크 : 자연인과 법인은 크로아티아 엔지니어협회의 허가하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p> <p><b>공급형태 2</b></p> <p>제한 없음.</p>
h) 의료서비스(심리학자 포함) 및 치의료 서비스 (CPC 9312 및 CPC 85201의 일부)	<p><b>공급형태 1</b></p> <p>오, 벨, 불, 사, 독, 텐, 예, 서, 편, 뜨, 그, 아, 이, 룩, 물, 네, 포, 루, 슬, 영 : 약속 안함. 베 : 사회의료서비스, 위생서비스, 역학(疫學) 서비스, 의료/생태 서비스, 혈액공급, 혈액준비와 이식 및 검시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크 : 원격의료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b>공급형태 2</b></p> <p>제한 없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 수의료서비스 (CPC 932)	<p>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에, 서, 프, 그, 형, 아, 이, 라, 몰, 네, 포, 루, 베, 슬 : 약속 안함. 영 : 수의외과의에게 공급되는 수의실험 및 수의기술 서비스, 일반자문, 지침 및 정보(예를 들어 영양, 행동 및 애완동물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j) 1. 조산원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p>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에, 서, 프, 그, 형, 아, 이, 라, 리, 륙, 몰, 네, 포, 루, 베, 슬, 영 : 약속 안함. 핀, 폴 : 간호사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크 : 원격의료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k) 의약품 소매 및 의료 및 정형외과 상품 소매 (CPC 63211)  약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sup>7</sup>	<p>공급형태 1 오, 벨, 불, 독, 사, 텐, 서, 핀, 프, 그, 아, 이, 륙, 몰, 네, 폴, 포, 루, 스, 슬, 베, 영 : 약속 안함. 체, 라, 리 : 우편 주문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형 : CPC 63211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sup>7</sup> 기타 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일반대중에 대한 의약품의 공급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 가능한 면허 및 자격 요건과 절차를 조건으로 함. 일반적으로 이 활동은 약사에게 유보됨.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처방약의 공급만이 약제사에게 유보되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PC 84)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C. 연구개발서비스	
사회·인문과학 연구개발서비스 (심리학자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CPC 852 <sup>8</sup> )	제한 없음.
자연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 (CPC 853)	유 : 공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연합 법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D. 부동산서비스 <sup>9</sup>	
a) 자가 또는 임차 재산 관련 (CPC 821)	공급형태 1 불, 사, 체, 에, 형, 아, 라, 리, 몰,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 크 :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sup>8</sup> 1.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에 기재된 CPC 85201의 일부임.

<sup>9</sup> 관련 서비스는 부동산 대리인 직종과 관련되며,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 및/또는 제한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요금 또는 계약에 근거 (CPC 822)	<p>공급형태 1 불, 사, 체, 예, 형, 아, 라, 리, 몰,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 크 :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리스 서비스	
a) 선박 관련 (CPC 83103)	<p>공급형태 1 불, 사, 독, 형, 몰, 루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p>공급형태 1 불, 사, 체, 형, 라, 몰, 폴, 루, 슬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불, 사, 체, 라, 몰, 폴, 루, 슬 : 약속 안함. 오, 벨, 독, 덴, 서, 예, 편, 프, 그, 형, 아, 이, 리, 륙, 네, 포, 베, 스, 영 : 유럽연합 항공사에 의해 사용되는 항공기는 그 항공사에 면허를 부여한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야 함. 단기 리스 계약에 대하여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p>
c) 그 밖의 운수장비 관련 (CPC 83101, CPC 83102 및 CPC 83105)	<p>공급형태 1 불, 사, 형, 라, 몰, 폴, 루, 베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 CPC 83107, CPC 83108 및 CPC 83109)	공급형태 1 불, 사, 체, 형, 몰, 폴, 루, 슬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e) 개인·가정물품 관련 (CPC 832)	공급형태 1 및 2 벨, 불, 사, 체, 득, 텐,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륙, 몰,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 안함. 예 : 가정용 엔터테인먼트 기기용 사전녹화 비디오 카셋트와 관련한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f) 통신장비 임대 (CPC 7541)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F. 기타 사업서비스	
a) 광고 (CPC 871)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CPC 864)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d)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CPC 866)	공급형태 1 및 2 형 : 중재 및 조정 서비스(CPC 86602)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p><b>공급형태 1</b></p> <p>이 : 생물학자 및 화학분석가 직종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크 : 법적 증명과 유사한 공식 서류의 발급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불, 사, 체, 몰, 폴, 루, 슬, 스 : 약속 안함.</p> <p><b>공급형태 2</b></p> <p>불, 사, 체, 몰, 폴, 루, 슬, 스 : 약속 안함.</p> <p>크 : 법적 증명과 유사한 공식 서류의 발급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f) 농업, 수렵업 및 임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1의 일부)	<p><b>공급형태 1</b></p> <p>이 : 농경제학자 및 “농업기술자”에게 유보된 활동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에, 몰, 루, 베 : 약속 안함.</p> <p><b>공급형태 2</b></p> <p>제한 없음.</p>
g)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2의 일부)	<p><b>공급형태 1</b></p> <p>라, 몰, 루, 베 : 약속 안함.</p> <p><b>공급형태 2</b></p> <p>제한 없음.</p>
h) 제조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4의 일부 및 CPC 885의 일부)	<p><b>공급형태 1 및 2</b></p> <p>제한 없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 직업 소개, 파견 서비스	
i) 1. 임원급 소개서비스 (CPC 87201)	<p>공급형태 1 오, 불, 사, 체, 독, 에, 서, 편, 크, 아, 라, 리, 몰, 폴, 포, 루, 슬, 베, 스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오, 불, 사, 체, 에, 편, 크, 라, 리, 몰,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p>
i) 2. 직업 소개서비스 (CPC 87202)	<p>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에, 서, 그, 편, 크, 프, 아, 이, 륙, 라, 리, 몰,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오, 불, 사, 체, 에, 편, 크, 라, 리, 몰,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p>
i) 3. 사무지원인력 파견서비스 (CPC 87203)	<p>공급형태 1 오, 불, 사, 체, 독, 에, 편, 프, 크, 이, 아, 라, 리, 몰, 네, 폴, 포, 루, 스, 슬, 베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오, 불, 사, 체, 에, 편, 크, 라, 리, 몰,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p>
i) 4. 가사보조인력, 기타 상업 또는 산업근로자, 간호 및 기타 인력 파견서비스 (CPC 87204, 87205, 87206, 87209)	<p>공급형태 1 및 2 형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약속 안함</p> <p>형 : 제한 없음.</p>
j) 1. 조사서비스 (CPC 87301)	공급형태 1 및 2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에, 편, 프, 그, 크, 형, 아, 이, 라, 리, 륙,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영 :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j) 2. 경비서비스 (CPC 87302, CPC 87303, CPC 87304 및 CPC 87305)	<p>공급형태 1 형 : CPC 87304, CPC 87305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벨, 불, 사, 체, 서, 예, 편, 프, 크, 이, 라, 리, 몰, 포,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형 : CPC 87304, CPC 87305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사, 체, 예, 크, 라, 리, 몰,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p>
k) 과학,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CPC 8675)	<p>공급형태 1 벨, 불, 사, 독, 텐, 서, 프, 그, 아, 이, 륙, 몰, 네, 폴, 포, 루, 베, 영 : 탐사서비스에 대해서 약속 안함. 크 : 크로아티아 영역에 관한 환경보호 컨설팅 서비스뿐 아니라 기본지질학, 측지학 및 채굴 컨설팅 서비스는 국내 법인과 공동으로 또는 국내 법인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음.</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l) 1. 선박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p>공급형태 1 해상운송선박에 대하여, 벨, 불, 사, 독, 텐, 서, 편, 프, 크, 그, 아, 이, 리, 몰, 네, 폴, 포, 루, 스, 베, 영 : 약속 안함. 내륙수로운송선박에 대하여, 예, 형, 라를 제외한 유럽연합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l) 2. 철도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p>공급형태 1 오, 벨, 불, 독, 사, 체, 텐, 서, 편, 프, 그, 크, 아, 이, 리, 라, 륙, 몰, 네, 폴, 포, 루, 스, 베, 슬, 영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 3.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차량 및 도로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6112, CPC 6122, CPC 8867의 일부 및 CPC 8868의 일부)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I) 4.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공급형태 1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핀, 프, 크, 그, 아, 이, 리, 륙, 몰, 네,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I) 5. 금속제품, (비사무용) 기계, (비)운송 및 비사무용) 장비 및 개인·가정용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 <sup>10</sup> (CPC 633, CPC 7545, CPC 8861, CPC 8862, CPC 8864, CPC 8865 및 CPC 8866)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m) 빌딩청소서비스 (CPC 874)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크, 아, 이, 륙, 라, 몰,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sup>10</sup>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6112, 6122, 8867, 및 8868)는 1.F.1)1.부터 1.F.1)4.까지에 기재됨.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기 및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845)는 1.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n) 사진서비스 (CPC 875)	<p>공급형태 1 불, 에, 몰, 폴 : 항공사진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 크, 라 : 전문사진서비스(CPC 87504)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o) 포장서비스 (CPC 876)	<p>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p>
p) 인쇄 및 출판 (CPC 88442)	<p>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p>
q) 국제회의서비스 (CPC 87909의 일부)	<p>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p>
r) 1.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p>공급형태 1 폴 : 서약한 통역사의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 헝, 슬 : 공식 번역 및 통역에 대하여 약속 안함. 크 : 공식 서류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r) 2. 인테리어 디자인 및 기타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p>공급형태 1 독 : 외국에서 수행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요금 및 수임료에 대하여 국내규칙이 적용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r) 3. 수금대리서비스 (CPC 87902)	공급형태 1 및 2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예, 편, 뜨, 그, 크, 형, 아, 이, 리, 륙,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r) 4. 신용조사서비스 (CPC 87901)	공급형태 1 및 2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예, 편, 뜨, 그, 크, 형, 아, 이, 리, 륙,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r) 5. 복제서비스 (CPC 87904 <sup>11)</sup> )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예, 편, 뜨, 그, 크, 형, 아, 이, 리, 륙, 물,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r) 6. 통신자문서비스 (CPC 7544)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r) 7. 전화응답서비스 (CPC 87903)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sup>11</sup> CPC 88442에 해당하며 1.F.p)에 기재된 출판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2. 커뮤니케이션서비스</b>	
<b>A.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b> 목적지가 국내 또는 외국을 불문하고 다음에 열거된 하위 분야 목록에 따른 우편 품목 <sup>12</sup> 의 취급 <sup>13</sup> 과 관련된 서비스: (i)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와 다이렉트 메일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 <sup>14</sup> 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가 기 재된 통신문의 취급, (ii) 주소가 기재 된 소포 및 소화물 <sup>15</sup> 의 취급, (iii) 주소 가 기재된 출판물 <sup>16</sup> 의 취급, (iv) 등기 또는 보험가입 우편물로서 (i)부터 (iii) 에 언급된 품목의 취급,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sup>12</sup> “우편 품목”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영자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상업적 운영자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sup>13</sup> “취급”이란 수집, 분류, 운송 및 배달 등의 활동을 말함.

<sup>14</sup> 예를 들어 서장, 엽서

<sup>15</sup> 서적, 카탈로그가 이에 포함됨.

<sup>16</sup> 잡지, 신문 및 정기간행물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v) (i)부터 (iii)에 언급된 품목의 특급 배달서비스<sup>17</sup>, (vi) 주소가 미기재된 품목의 취급, 그리고 (vii) 문서 교환<sup>18</sup></p> <p>그러나 하위 분야 (i), (iv) 및 (v)는 중량이 350그램 미만일 경우 그 가격이 공공 기본요금의 5배 미만인 통신품목<sup>19</sup> 및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등기우편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된다.</p> <p>(CPC 751의 일부, CPC 71235<sup>20</sup>의 일부 및 CPC 73210<sup>21</sup>의 일부)</p>	

<sup>17</sup> 특급배달서비스는 더욱 빠른 속도와 신뢰성과 함께 발송지로부터의 수집, 수취인에 대한 개별 배달, 종적 조회, 배송 중 도착지 및 수취인 변경 가능성, 수취 확인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

<sup>18</sup> 제 3 자에 의한 운송 및 임시장소의 제공을 포함하여 이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간 우편품목을 상호 교환하는 자체배달을 허용하는 수단의 제공. “우편 품목”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영자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상업적 운영자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sup>19</sup> “통신품목”이란 발송자가 자체에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한 주소에 전달 및 배달되는, 모든 유형의 물리적 매체에 서면으로 기재된 통신을 의미함. 서적, 카탈로그, 신문 및 정기간행물은 통신품목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sup>20</sup>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육상 운송

<sup>21</sup> 우편물품의 자체 항공 운송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B. 통신서비스</b> 이 서비스는 그 운송을 위하여 통신서비스가 필요한 컨텐츠의 제공으로 구성된 경제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함.	
a)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된 모든 서비스 <sup>22</sup> , 방송 <sup>23</sup> 은 제외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b) 위성방송 전송서비스 <sup>24</sup>	공급형태 1 및 2  유 : 이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는 전자통신에 대한 유럽연합 규제들에 따라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 이익 목표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벨 : 약속 안함.

<sup>22</sup> 이 서비스는 1.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된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CPC 843의 일부)을 포함하지 않음.

<sup>23</sup> 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사업자 간의 중계연결은 포함되지 아니함.

<sup>24</sup> 이 서비스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되는 통신서비스(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위성을 통한,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를 포함함. 이 서비스는 위성서비스 이용의 판매를 포함하나 가정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이 서비스는 국내간 연결(위성에 의한 국내영토로부터 국내 영토로의 전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511, CPC 512, CPC 513, CPC 514, CPC 515, CPC 516, CPC 517 및 CPC 518)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4. 유통서비스 (무기, 총포탄, 폭발물 및 기타 전쟁 물자의 유통은 제외)  A. 위탁중개인서비스 a)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위탁중개 인서비스 (CPC 61111의 일부, CPC 6113의 일부 그리고 CPC 6121의 일부) b) 기타 위탁중개인서비스 (CPC 621)	공급형태 1 및 2 <b>오, 크, 베, 스, 펀을 제외한 유</b> : 화학제품, 귀금속 (그리고 보석)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b>오</b> : 불꽃제조 상품, 가연성 물품 및 폭발 장치, 그리고 독성 물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b>오, 불</b> : 의료 및 외과 기구, 의료 물질 및 의료용 도구와 같은 의료용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b>크</b> : 담배 제품에 대하여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b>오, 불, 브, 폴, 루</b> : 담배 및 담배제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b>이</b> : 도매서비스에 대하여 담배에 대한 국가 특점이 있음. <b>불, 펀, 폴, 루, 스</b> : 알콜 음료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b>오, 불, 체, 펀, 루, 슬, 베</b> : 의약품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b>불, 형, 폴</b> : 상품중개인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b>프</b> : 위탁중개인서비스에 대하여, 신선 식품에 대한 국가적 이해가 있는 17개 시장에서 활동하는 매매업자 및 중개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의약품 도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b>B. 도매서비스</b></p> <p>a)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도매서비스 (CPC 61111의 일부,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p> <p>b) 통신단말기 도매서비스 (CPC 7542의 일부)</p> <p>c) 기타 도매서비스 (CPC 622, 에너지제품 도매서비스<sup>25</sup>는 제외)</p>	<p>몰 : 위탁중개인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벨, 불, 사, 독, 덴, 서, 프, 그, 아, 이, 륙, 몰, 네, 폴, 포, 슬, 영 : 소매서비스에 대하여, 우편판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

<sup>25</sup> CPC 62271를 포함하는 이 서비스는 14.D.중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C. 소매서비스<sup>26</sup></b>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소매서비스 (CPC 61112,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통신단말기 소매서비스 (CPC 7542의 일부) 식품 소매서비스 (CPC 631)	
그 밖의(비에너지) 물품의 소매서비스 의 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물품 <sup>27</sup> 소매서비스 제외 (CPC 63211 및 63297 제외한 CPC 632)	
<b>D. 프랜차이징</b> (CPC 8929)	

<sup>26</sup> 사업서비스의 1.B. 및 1.F.1)에 기재된 유지 및 보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에너지서비스의 14.E. 및 14.F.에 기재된 에너지제품의 소매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sup>27</sup>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물품의 소매는 1.A.k)의 전문직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5. 교육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A. 초등교육서비스 (CPC 921)	<p>공급형태 1 불, 사, 핀, 프, 크, 이, 몰, 루, 스, 베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사, 핀, 크, 몰, 루, 스, 베 : 약속 안함.</p>
B. 중등교육서비스 (CPC 922)	<p>공급형태 1 불, 사, 핀, 프, 크, 이, 몰, 루, 스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사, 핀, 몰, 루, 스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1 및 2 라 : 장애학생을 위한 기술 및 직업 중등 학교형 교육서비스(CPC 9224)와 관련된 교육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C. 고등교육서비스 (CPC 923)	<p>공급형태 1 오, 불, 사, 핀, 몰, 루, 스 : 약속 안함.</p> <p>프 :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교육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를 얻을 수 있음.</p> <p>이 : 서비스 공급자가 국가 공인 졸업장 발급을 인가받기 위한 국적조건이 있음.</p> <p>공급형태 2 오, 불, 사, 핀, 몰, 루, 스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1 및 2 체, 슬 : 중등교육 후 기술 및 직업 교육서비스 (CPC 92310)를 제외하고 고등교육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성인교육서비스 (CPC 924)	<p>공급형태 1 및 2</p> <p>사, 편, 몰, 루, 스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1</p> <p>오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성인교육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E. 기타 교육서비스 (CPC 929)	<p>공급형태 1 및 2</p> <p>오, 벨, 불, 사, 독, 덴, 서, 에, 편, 뜨, 그, 형, 아, 이, 라, 리, 륙, 몰, 네, 폴, 포, 루, 베, 스, 영 :</p> <p>약속 안함.</p> <p>공급형태 1</p> <p>크 : 통신교육 또는 통신장비를 통한 교육에 대하여 제한 없음.</p>
6. 환경서비스 A. 폐수서비스 (CPC 9401 <sup>28</sup> )  B. 고체/유해폐기물관리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운송은 제외 a) 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2) b) 위생 및 유사 서비스 (CPC 9403)	<p>공급형태 1</p> <p>유 : 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p> <p>제한 없음.</p>

---

<sup>28</sup> 하폐수서비스에 해당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C. 대기 및 기후 보호 (CPC 9404<sup>29)</sup>)</p> <p>D. 토양 및 수질 개선과 정화</p> <p>a) 오염된 토양 및 수질 처리와 개선 (CPC 94060의 일부<sup>30)</sup>)</p> <p>E. 소음 및 진동 저감 (CPC 9405)</p> <p>F.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p> <p>a)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CPC 9406의 일부)</p> <p>G. 기타 환경 및 부수 서비스 (CPC 94090)</p>	

<sup>29</sup> 배기가스 정화서비스에 해당함.

<sup>30</sup>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의 일부에 해당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7. 금융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p><b>공급형태 1 및 2</b></p> <p><b>오, 벨, 체, 독, 텐, 서, 핀, 브, 그, 헝, 아, 이, 륙, 네, 폴, 포, 루, 슬, 스, 베, 영 :</b> 다음에 관련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외하고 직접보험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a)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p> <p>b)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p> <p><b>오 :</b> 유럽연합에 설립되지 아니한 자회사 또는 오스트리아에 설립되지 아니한 지점을 대표하여 모집 활동 및 중개를 하는 것은 금지됨(재보험 및 재재보험은 제외). 국제 상업적 항공운송에 대한 보험을 제외하고 강제 항공보험은 유럽연합에 설립된 자회사 또는 오스트리아에 설립된 지점에 의해서만 인수될 수 있음. 유럽연합에 설립되지 아니한 자회사 또는 오스트리아에 설립되지 아니한 지점이 체결하는 계약(재보험 및 재재보험 계약은 제외)에 의해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 이와 같이 보험료에 대한 더 높은 세율의 적용에 대한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p> <p><b>텐 :</b> 유럽연합에 설립된 회사에 의하여만 강제 항공보험에 인수될 수 있음. 덴마크법 또는 덴마크의 권한 있는 당국이 면허를 부여한 보험회사 외에는, 어떠한 인 또는 회사(보험회사를 포함)도, 덴마크 내에서 사업 목적을 위해, 덴마크 거주자, 덴마크 선박 또는 덴마크 내 재산에 대하여 직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조력할 수 없음.</p> <p><b>독 :</b> 유럽연합에 설립된 자회사 또는 독일에 설립된 지점에 의하여만 강제 항공보험증권을 인수할 수 있음. 외국 보험회사가 독일에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독일 내 설립된 지점을 통해서만 국제 운송과 관련된 보험계약을 독일 내에서 체결할 수 있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b>프</b> : 육상 운송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은 유럽연합에 설립된 보험회사에 의해서만 인수될 수 있음.</p> <p><b>풀</b> : 재보험, 재재보험 및 국제무역에서의 상품에 대한 보험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b>포</b> : 유럽연합에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만 상품, 항공기, 선체 및 책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항공 및 해상운송 보험을 인수할 수 있음. 유럽연합에 설립된 인 또는 회사만이 포르투갈에서 그러한 보험사업에 대한 중개업자로 활동 할 수 있음.</p> <p><b>루</b> : 국제시장에 대한 재보험은 재보험된 위험이 국내시장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용됨.</p> <p><b>공급형태 1</b></p> <p><b>오, 벨, 체, 독, 덴, 서, 핀, 프, 그, 형, 아, 이, 룩, 네, 포, 루, 슬, 스, 베, 영</b> : 다음에 관한 위험에 관련한 보험을 제외하고 직접보험중개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li> <li>b)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li> </ul> <p><b>불</b> : 불가리아 내에서 외국인에게 외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직접보험에 대하여 약속 안함.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운송보험, 운송수단 자체에 대한 보험 및 불가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위험에 관한 책임 보험은 외국 보험회사에 의해 직접 인수될 수 없음. 외국 보험회사는 오직 유럽연합 내 지점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강제 보험제도뿐 아니라 예금보험 및 유사한 보상 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b>사, 라, 몰 :</b>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외하고 직접보험서비스에 대해 약속 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li> <li>b)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li> </ul> <p><b>리 :</b>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외하고 직접보험서비스에 대해 약속 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li> <li>b) 리투아니아 내에 위험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육상운송과 관련한 것은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li> </ul> <p><b>라, 리, 폴 :</b> 보험 중개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b>핀 :</b> 유럽연합에 본점이 있거나 핀란드에 지점이 있는 보험자만이 (공동보험 포함) 직접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보험중개서비스의 공급은 유럽연합 내의 상시적인 영업장소를 조건으로 함.</p> <p><b>크 :</b> 다음을 제외하고 직접보험과 직접보험 중개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생명보험 :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생명보험 제공</li> <li>b) 손해보험 : 자동차 손해배상 외의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손해보험 제공</li> <li>c) 해상, 항공, 운송</li> </ul> <p><b>헝 :</b> 유럽연합에 설립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의한 헝가리 영역 내 직접보험 공급은 헝가리에 등록된 지점 사무소를 통해서만 허용됨.</p> <p><b>이 :</b> 보험계리 직종에 대하여 약속 안함. 상품에 대한 운송보험, 운송수단 자체에 대한 보험 및 이탈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위험에 관한 책임보험은 유럽연합에 설립된 보험회사만이 인수할 수 있음. 이 유보는 이탈리아로의 수입 품과 관련된 국제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스 : 직접보험의 공급은 스웨덴에서 인가된 보험서비스 공급자를 통해서만 협용됨. 다만, 외국 서비스 공급자 및 스웨덴 보험회사가 같은 그룹의 회사에 속하거나 그들 사이에 협력 협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p> <p>서 : 보험계리서비스에 대하여, 거주요건 및 3년간의 관련 경력 요건이 있음.</p> <p><b>공급형태 2</b></p> <p>오, 벨, 불, 체, 사, 득, 텐, 서, 펀, 프, 그, 형, 아, 이, 룩, 몰, 네, 폴, 포, 루, 슬, 스, 베, 영 : 중개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불 : 직접보험에 대하여, 불가리아 영역 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불가리아 자연인 및 법인은 불가리아에서의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불가리아에서 보험활동을 수행하도록 면허를 받은 공급자와만 보험을 체결할 수 있음. 이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 보상은 불가리아 내에서 지급됨. 강제 보험제도뿐 아니라 예금 보험 및 기타 유사 보상 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크 : 직접보험과 직접보험 중개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다음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생명보험 :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명보험 가입 능력</li> <li>b) 손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동차 손해배상 외의 손해보험 가입 능력</li> <li>(ii) 크로아티아 공화국에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재산 손해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한 업무 설비를 포함해 해외투자업무와 연계하여 해외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회사</li> <li>- 외국채권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담보 보험)</li> <li>- 해당국의 규제에 부합하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전액출자기업과 합작 투자기업의 개인과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li> <li>- 외국 고객(구매자)과 체결한 계약에 명시되는 경우, 건조 및 점검 중인 선박</li> </ul> </li> </ul> </li> <li>c) 해상, 항공, 운송</li> </ul> <p>이 : 상품에 대한 운송보험, 운송수단 자체에 대한 보험 및 이탈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보험은 유럽 연합에 설립된 보험회사에 의하여만 인수될 수 있음. 이 유보는 이탈리아로의 수입품과 관련된 국제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보험 제외)  아래에 표시된 모든 하위 분야	<p>공급형태 1</p> <p>오, 벨, 불, 체, 독, 텐, 서, 편, 프, 그, 형, 아, 이, 륙, 네, 폴, 포, 슬, 스, 영 : 금융정보 및 금융자료처리의 제공,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벨 : 투자자문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벨기에 내에서 설립이 요구됨.</p> <p>불 : 통신네트워크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및 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p> <p>사 : 양도가능 증권의 거래, 금융정보 및 금융자료처리의 제공,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에 : 예금 수취에 대하여, 에스토니아 금융감독당국의 인가 및 합자주식회사, 자회사 또는 지점으로서 에스토니아법에 따른 등록이 요구됨.</p> <p>에 : 투자펀드의 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관리회사의 설립이 요구되며, 유럽연합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회사만이 투자펀드 자산의 예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p> <p>크 : 여신, 금융리스, 지불 및 송금서비스, 보증 및 약정, 자금중개,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과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 부수 금융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리 : 계약형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관리회사의 설립이 요구되며, 유럽연합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회사만이 투자펀드 자산의 예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p> <p>아 : 투자서비스 또는 투자자문의 제공은 다음의 하나를 요구함. (a) 통상적으로 그 실체가 법인화되거나 제휴 또는 단독 거래자이기를 요구하는 아일랜드에서의 인가(인가는 일정한 경우 요구되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대한 민국 서비스 공급자가 아일랜드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 서비스가 사인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 본점/등록사무소를 아일랜드 내에 보유, 또는 (b) 투자 및 서비스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의 인가</p> <p>이 : “금융 판매원(<i>promotori di servizi finanziari</i>)”에 대하여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b>라</b> :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 금융정보 및 금융자료처리의 제공, 그리고 증개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b>리</b> : 연금기금 관리에 대하여 상업적 주체가 요구됨.</p> <p><b>몰</b> : 예금의 수취, 모든 유형의 대부, 금융정보 및 금융자료처리의 제공, 그리고 증개를 제외한 자문 및 기타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b>풀</b> :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금융자료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공공통신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인가된 운영자의 네트워크의 사용이 요구됨.</p>
	<p><b>루</b> : 금융 리스, 화폐시장 상품, 외환, 파생상품, 환율 및 이자율 상품, 양도성 증권, 그리고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증서 및 금융자산의 거래,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 대한 참여, 자산관리 그리고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지급 및 송금 서비스는 오직 루마니아에서 설립된 은행을 통하여 허용됨.</p> <p><b>베</b> : (a) 국채의 발행에 대한 참여, 연금기금관리 : 약속 안함.            (b) 국채의 발행에 대한 참여, 연금기금관리,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자문 및 기타 부수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하위 분야 : 신용(모든 종류의 차용)의 수취, 그리고 국내의 법적 실체 및 단독소유 기업의 외국 신용기관으로부터의 보증 및 약정의 인수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외국인은 국내 은행 및 증권중개회사를 통해서만 외국증권을 제공할 수 있음. 슬로베니아 증권거래소의 회원은 슬로베니아 내에서 법인화되거나 외국 투자 회사 또는 은행의 지점이어야 함.</p> <p><b>공급형태 2</b></p> <p><b>불</b> : 통신네트워크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및 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p> <p><b>풀</b> : 금융정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금융자료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공공통신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인가된 운영자의 네트워크의 사용이 요구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8. 보건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A. 병원서비스 (CPC 9311) C.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CPC 93193)	<p>공급형태 1 오, 벨, 불, 독, 사, 체, 텐, 서, 예, 핀, 프, 그, 크, 아, 이, 라, 리, 물, 륙, 네, 폴, 포, 루, 베, 스, 슬, 영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D. 사회서비스 (CPC 933)	<p>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예, 서, 그, 핀, 프, 크, 형, 아, 이, 륙, 물, 폴, 포, 루, 스, 베, 슬, 영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벨 : 조리원과 요양원 및 양로원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CPC 641, CPC 642 및 CPC 643)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제외 <sup>31</sup>	<p>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서, 프, 그, 아, 이, 라, 리, 륙,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케이터링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크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sup>31</sup>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운송 부수 서비스 중 12.E.a)의 지상조업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여행매니저 포함) (CPC 7471)	<p>공급형태 1 불, 형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C. 관광안내서비스 (CPC 7472)	<p>공급형태 1 불, 사, 체, 형, 이, 리, 몰, 폴, 슬, 베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10. 레크리에이션 ·문화·스포츠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제외)	
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극장, 라이브 밴드, 서커스 및 디스코텍 포함) (CPC 9619)	<p>공급형태 1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애, 핀, 프, 그, 크, 형, 아, 이, 라, 리, 륙,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영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사, 체, 핀, 몰,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p> <p>불 : 극장 공연물 제작자, 가수 그룹, 밴드 및 오케스트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1),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및 그 밖의 개인 예술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CPC 96192), 그리고 극장 부수 서비스(CPC 96193)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애 : 영화관서비스를 제외하고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CPC 96199)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크 :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한 없음. 내국민대우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p> <p>리, 라 : 영화관운영서비스(CPC 96199의 일부)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뉴스제공서비스 (CPC 962)	<p>공급형태 1 불, 사, 체, 에, 형, 리, 몰, 루, 폴, 베, 슬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불, 사, 체, 형, 리, 몰,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p>
C.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CPC 963)	<p>공급형태 1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편, 프, 그, 크, 형, 아, 이, 리, 라, 륙,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편, 프, 그, 크, 형, 아, 이, 리, 라, 륙,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p>
D. 스포츠서비스 (CPC 9641)	<p>공급형태 1 및 2 오 : 스키학교서비스 및 산악가이드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불, 체, 라, 몰, 폴, 루, 슬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1 사, 에, 크 : 약속 안함.</p>
E. 레크리에이션 파크 및 해변 서비스 (CPC 96491)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1. 운송서비스	
A. 해상운송	공급형태 1 및 2
a) 국제여객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1 <sup>32)</sup>	제한 없음.
b) 국제화물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2 <sup>33)</sup>	

<sup>32</sup>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sup>33</sup>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내수운송	
<b>a) 여객운송</b>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21 <sup>34)</sup> <b>b) 화물운송</b>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22 <sup>35)</sup>	<b>공급형태 1 및 2</b> <b>유 :</b> 기존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라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된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와 관련한 국적기준을 충족하는 운영자에게 운수권 일부를 유보함. 라인강 운송에 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을 조건으로 함. <b>오 :</b> 자연인이 해운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경영 이사, 경영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과반수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오스트리아에 해운회사로 등록되거나 상시적인 설립이 요구됨. 아울러, 사업주식의 과반수가 유럽연합 시민에 의해 보유되어야 함. <b>벨, 사, 체, 애, 편, 크, 형, 리, 몰, 루, 스, 베, 슬 :</b> 약속 안함.

<sup>34</sup>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sup>35</sup>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철도운송 a) 여객운송 (CPC 7111) b) 화물운송 (CPC 7112)	공급형태 1 유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D. 도로운송 a) 여객운송 (CPC 7121 및 CPC 7122) b) 화물운송 (CPC 7123,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운송 제외 <sup>36</sup> )	공급형태 1 유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E. 연료 외의 상품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 <sup>37</sup> (CPC 7139)	공급형태 1 유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예, 펀, 뜨, 그, 아, 이, 라, 륙,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sup>36</sup> CPC 71235 의 일부로서 통신서비스 중 2.A.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 기재됨.

<sup>37</sup>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4.B.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2. 운송 부수 서비스 <sup>38</sup>	
A. 해운 부수 서비스 a) 해상화물취급서비스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통관서비스 d)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e) 해운대리업서비스 f)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g) 선원포함 선박대여 (CPC 7213)	<p>공급형태 1</p> <p>유 : 해상화물취급서비스 및 예선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오, 불, 사, 체, 독, 에, 형, 리, 몰, 폴, 루, 스, 베, 슬 : 선원 포함 선박대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크 : 화물운송대리업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p> <p>제한 없음.</p>
h) 예선서비스 (CPC 7214) i) 해상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5의 일부) j)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sup>38</sup> 사업서비스의 1.F.1)1.부터 1.F.1)4.에 기재된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내수운송 부수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유 : 기존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라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된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와 관련한 국적조건을 충족하는 운영자를 위하여 운항권 일부를 유보함. 라인강 운송에 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을 조건으로 함.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유 : 예선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크 : 약속 안함
d) 선원포함 선박대여 (CPC 7223)	공급형태 1 오, 불, 사, 체, 독, 에, 편, 형, 라, 리, 몰, 류, 슬, 베, 스 : 선원 포함 선박대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e) 예선서비스 (CPC 7224)	
f) 내수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5의 일부)	
g)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	공급형태 1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유 : 화물입환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크 : 화물운송대리업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공급형태 2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제한 없음.
d) 화물입환서비스 (CPC 7113)	
e) 철도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3)	
f)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도로운송 부수 서비스	공급형태 1 오, 불, 사, 체, 예, 형, 라, 리, 몰, 폴, 루, 슬, 베, 스 : 운영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에 대하여 약속 안함.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크 : 기타 지원 및 운송 부수 서비스 하의 화물운송대리업 서비스와 도로운송 지원 서비스 및 운송서류 준비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d) 운영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 (CPC 7124)	
e) 도로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4)	
f)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E.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	
a) 지상조업서비스 (케이터링서비스 포함)	공급형태 1 유 : 케이터링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불, 사, 체, 크, 형, 몰, 폴, 루, 슬, 베 :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창고업 (CPC 742의 일부)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c) 화물운송대리업 (CPC 748의 일부)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d) 송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CPC 734)	공급형태 1 및 2  유 : 유럽연합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되어야 함. 또는 면허를 부여하는 회원국이 허용하는 경우,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도 됨.  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기준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소유 및 통제에 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에 의해 소유될 것이 요구될 수 있음.  예외적으로, 유럽연합 항공사의 예외적인 필요, 계절적 운영능력 수요, 또는 유럽연합 내에 등록된 항공기의 리스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항공사는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유럽연합 항공사에게 유럽연합 항공사에게 면허를 부여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승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리스할 수 있음.  크 : 약속 안함.
e) 판매 및 마케팅 f) 컴퓨터 예약시스템	공급형태 1 및 2  유 : 유럽연합 항공사가 유럽연합 내에서 제공받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 <sup>39</sup> 를 대한민국에 있는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유럽연합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가 유럽연합 내에서 받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각각 유럽연합 내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가 대한민국의 항공사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또는 유럽연합 항공사가 대한민국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sup>39</sup> “동등한 대우”라 함은 유럽연합 항공사 및 유럽연합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를 비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F. 연료 외의 상품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 <sup>40</sup> a) 파이프라인에 의해 운송되는 연료 외의 상품 창고업 (CPC 742의 일부)	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펀, 프, 그, 크, 아, 이, 리, 륙,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13. 기타 운송서비스	
복합운송서비스 제공	오, 불, 사, 체, 에, 형, 리, 라, 몰, 폴, 루, 스, 베, 슬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제한 없음. 모든 주어진 운송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이 약속 목록에 명기된 제한을 저해하지 아니함. 오, 불, 사, 체, 에, 크, 형, 리, 라, 몰, 폴, 루, 스, 베, 슬 : 약속 안함.
14. 에너지서비스	
A.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sup>41</sup> )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sup>40</sup>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4.C에 기재됨.

<sup>41</sup>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함: 광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지상 준비, 지상 장비 설치, 드릴링, 드릴링빗 서비스, 케이싱 및 도관 서비스, 머드 제조 및 공급, 고체물질 관리, 파쇄 및 하향공 특수작업, 유정지 지질 및 드릴링 통제, 코어 채취, 유정 검사, 와이어선서비스, 끝처리 액(염수) 공급 및 작업, 끝처리 기구 공급 및 설치, 시멘트(프레스 펌핑), 스티뮬레이션 서비스(파쇄, 산성 물질 처리 및 프레스 펌핑), 개수 및 유정 보수 서비스 그리고 유정 충전 및 폐쇄 천연자원에 대한 직접 접근 또는 이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기재된 석유 및 가스 외의 자원 채굴을 위한 지상 준비 작업(CPC 5115)은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 (CPC 7131)	<p>공급형태 1 유: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에, 펀, 프, 그, 아, 이, 라, 륙,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p>
C.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연료 창고업 서비스 (CPC 742의 일부)	<p>공급형태 1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서, 펀, 프, 그, 크, 아, 이, 리, 륙,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D. 고체, 액체 및 기체 연료와 관련 제품의 도매서비스 (CPC 62271) 그리고 전력, 증기 및 온수 도매서비스	<p>공급형태 1 유 : 전력, 증기 및 온수의 도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E. 자동차연료 소매서비스 (CPC 613)	<p>공급형태 1 유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F. 연료용 유류, 용기에 담긴 가스, 석탄 및 목재의 소매판매 (CPC 63297) 그리고 전력, (용기에 담기지 않은) 가스, 증기 및 온수 소매서비스	<p>공급형태 1 유 : 전력, (용기에 담기지 않은) 가스, 증기 및 온수의 소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벨, 불, 사, 체, 독, 덴, 서, 프, 그, 아, 이, 륙, 몰, 네, 폴, 포, 슬, 영 : 연료용 유류, 용기에 담긴 가스, 석탄 및 목재의 소매서비스에 대하여, 우편주문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우편주문에 대하여 제한 없음.)</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G. 에너지 유통 부수 서비스 (CPC 887)	<p>공급형태 1 유 : 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컨설팅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15. 기타 서비스	
a) 세탁 및 염색 서비스 (CPC 9701)	<p>공급형태 1 유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b) 머리미용서비스 (CPC 97021)	<p>공급형태 1 유 : 약속 안함.</p> <p>공급형태 2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화장,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서비스 (CPC 97022)	공급형태 1 유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d)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미장서비스 (CPC 97029)	공급형태 1 유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e)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육체적 휴식 복지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는 스파 서비스 및 비의료요법 마사지 <sup>42</sup> (CPC ver. 1.0 97230)	공급형태 1 유 : 약속 안함. 공급형태 2 제한 없음.
g) 통신연결서비스 (CPC 7543)	공급형태 1 및 2 제한 없음.

<sup>42</sup> 의료요법 마사지와 열치료서비스는 1.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1.A.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보건서비스(8.A 및 8.C)에 기재됨.

유럽연합 당사자

제7.13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

(설립)

1. 아래의 약속 목록은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는 경제적 활동, 그리고 유보에 의해 그러한 활동에서 대한민국의 설립 및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 민대우 제한을 표시한다. 아래의 목록은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가. 유럽연합 당사자에 의해 약속되는 분야 또는 하위분야 그리고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 그리고

나. 적용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아래 목록에 언급되지 아니한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서 설립은 약속되지 아니한다.

2.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적시함에 있어,

가.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나. CPC란 제7.25조에 대한 각주 27에 언급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그리고

다. CPC 개정판 1.0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77, 1998년 발간 CPC 개정판 1.0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3.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조치가 제7.11조 및 제7.12조의 의미에서의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아래의 목록은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필요,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인정 획득 필요,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필요 그리고 일정한 활동이 환경적으로 보호받는 구역 또는 특별히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이익이 있는 지역에서 수행될 수 없도록 하는 비차별적 요건)는, 비록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제7.1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목록은 당사자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에 관한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7.11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의 법적 형태의 유형에 대한 비차별적 요건은 유럽연합 당사자에 의해 유지되거나 채택되기 위하여 설립에 관한 아래의 약속 목록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6. 아래 목록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7. 다음 약어는 아래의 목록에서 사용된다.

오 : 오스트리아

벨 : 벨기에

불 : 불가리아

사 : 사이프러스

체 : 체코공화국

독 : 독일

덴 : 덴마크

유 : 회원국 전부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서 : 스페인

에 : 에스토니아

핀 : 핀란드

프 : 프랑스

그 : 그리스

크 : 크로아티아

헝 : 헝가리

아 : 아일랜드

이 : 이탈리아

라 : 라트비아

리 : 리투아니아

룩 : 룩셈부르크

몰 : 몰타

네 : 네덜란드

폴 : 폴란드

포 : 포르투갈

루 : 루마니아

슬 : 슬로바키아

베 : 슬로베니아

스 : 스웨덴

영 : 영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모든 분야	<p><b>부동산</b></p> <p>오, 불, 사, 체, 텐, 에, 그, 핀, 형, 아, 이, 라, 리, 물, 폴, 루, 베, 슬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제한 없음.</p> <p>오 : 외국의 자연인과 외국 법인에 의한 부동산의 임대 또는 리스뿐 아니라 취득 또는 구매는 권한 있는 지역 당국 (<i>Länder</i>)의 인가를 요구하며, 동 지역 당국은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이해가 영향 받는지 여부를 검토함.</p> <p>불 : 외국의 자연인 및 외국 법인(지점을 통하는 방식 포함)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불가리아의 법인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p> <p>외국 법인 및 해외에 영주하는 외국 시민은 재무부의 허가를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 및 부동산의 제한된 재산권<sup>1</sup>을 취득할 수 있음. 이러한 허가 요건은 불가리아에 이미 투자한 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함.</p> <p>해외에 영주하는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및 외국인이 결정을 채택하는 데 과반수를 확보하거나 결정의 채택을 저지할 수 있도록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허가를 조건으로 내각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한 지역에서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p> <p>사 : 약속 안함.</p> <p>체 : 외국의 자연인 및 법적 실체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 외국의 실체는 체코의 법적 실체의 설립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의 실체의 토지 취득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p> <p>텐 : 비거주 물리적 및 법적 실체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함. 외국의 물리적 및 법적 실체에 의한 농업용 부동산 구매에 제한이 있음.</p>

<sup>1</sup> 불가리아 재산법은 다음의 제한된 재산권을 인정함 : 사용권, 건축권, 상부구조물 설치권과 지역권 및 채취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에 : 농업용 및 임업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약속 안함<sup>2</sup>.</p> <p>그 : 법 제1892/90에 따라, 시민이 국경 근접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함. 행정적 관행에 따라, 허가는 직접투자에 쉽게 부여됨.</p> <p>핀 : (올란드(Åland) 제도): 올란드(Å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제도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올란드(Åland) 제도의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권리가 제한됨. 올란드(Å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그 제도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설립 및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가 제한됨.</p> <p>크 : 크로아티아에 설립되거나 편입되지 않은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약속 안함. 법인으로서 크로아티아에 설립되거나 편입된 회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은 허락됨. 지점의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은 법무부의 승인이 요구됨. 농지는 외국인에 의하여 취득될 수 없음.</p> <p>헝 : 외국 투자자에 의한 토지 및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음<sup>3</sup>.</p> <p>아 : 국내 또는 외국 회사 또는 외국 국민이 아일랜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함. 그러한 토지가 (농업관련 산업이 아닌) 산업용인 경우 “기업, 무역 및 고용부”로부터의 이 효과를 위한 증명을 조건으로 이 요건이 면제됨. 이 법은 도시 경계 내의 토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함.</p> <p>이 : 외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한 부동산 구매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p> <p>라 :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약속 안함. 99년을 넘지 아니하는 토지 리스는 허용됨.</p> <p>리 : 토지 취득에 대하여 약속 안함<sup>4</sup>.</p> <p>몰 : 부동산 재산권 취득에 관한 몰타 법 및 규정의 요건이 계속 적용됨.</p>

<sup>2</sup>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sup>3</sup>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sup>4</sup>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b>풀</b> : 외국인(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부동산 취득에는 허가가 요구됨. 국가 소유 재산의 취득(즉, 민영화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약속 안함.</p> <p><b>루</b> : 루마니아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본부를 보유하지 아니하는 법인뿐 아니라 루마니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은 생전행위를 통하여 어떤 종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음.</p> <p><b>베</b> : 외국인 자본 참여를 통하여 슬로베니아 내에 설립된 법인은 슬로베니아 영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인이 슬로베니아에 설립한 지점<sup>5</sup>은 그들이 설립된 목적에 따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만을 취득할 수 있음. 다른 쪽 당사자 법인 또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한 회사가 국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특별 허가를 조건으로 함.</p> <p><b>슬</b> : 외국의 물리적 및 법적 실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함. 외국의 실체는 슬로바키아의 법적 실체의 설립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토지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모든 분야	<p><b>공익사업</b></p> <p><b>유</b> : 국가 또는 지방 수준에서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제활동은 공공독점 또는 사적 운영자에 대해서 부여된 배타적 권리로 조건으로 할 수 있음<sup>67</sup>.</p>

<sup>5</sup> 상업회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내에 설립된 지점은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나, 활동과 관련하여 지점에 대한 대우는 GATS 제 28 조 제사항에 따른 현지법인과 동일함.

<sup>6</sup> 공익사업이 중앙 정부 이하의 수준에서도 종종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으로 모든 분야별 양허를 열거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이해를 돋기 위하여 이 약속 목록의 구체적 각주에서는 공익사업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가 예시적이며 비열거적으로 제시될 것임.

<sup>7</sup> 이 제한은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모든 분야	<p><b>설립의 종류</b></p> <p><b>유</b> : 유럽연합 회원국법에 따라 형성되고, 유럽연합 내에 등록된 사무소, 경영본부 또는 주영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회사의) 현지법인에 부여되는 경우는 대한민국 회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설립한 지점 또는 대리점에 부여되지 아니함<sup>8</sup>.</p> <p><b>불</b> : 지점의 설립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p> <p><b>예</b> : 최소 경영위원회 구성원의 절반이 유럽연합 내에 거주해야 함.</p> <p><b>핀</b> : 핀란드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에서 동업자로서 사업을 행하는 대한민국인은 사업 허가가 필요하고 유럽연합 내에 영구 거주해야 함.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이사회 구성원 및 대리인의 최소 절반이 국적 및 거주요건이 있음. 그러나 특정 회사에는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설립자의 절반 및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에 대하여 영구 거주가 요구됨.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동 법인 또한 거주요건을 조건으로 함. 대한민국의 조직이 핀란드에 지점을 설립하여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허가가 요구됨. 대한민국의 조직 또는 유럽연합의 시민이 아닌 자연인에게는 유한회사의 설립자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허가가 요구됨.</p> <p><b>이</b> : 산업, 상업, 기술 활동에 대한 접근은 거주 허가 및 그 활동을 행하기 위한 구체적 인가를 조건으로 함.</p> <p><b>불, 폴</b> : 대표사무소의 운영 범위는 그 대표사무소가 대표하는 외국의 모회사의 광고 및 홍보만을 포함할 수 있음.</p>

<sup>8</sup>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 54 조에 따라 이러한 현지법인들은 유럽연합 법인으로 간주됨. 유럽연합의 경제와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연계를 가지는 범위에서 이 현지법인들은 유럽연합 내부시장의 수혜를 받으며, 이는 특히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설립과 서비스공급의 자유를 포함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b>풀 :</b>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 지점에 대하여 약속 안함. 대한민국 투자자는 유한조합,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합자주식 회사(법률서비스의 경우, 오직 등록제휴 및 유한조합)의 형태로만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p> <p><b>루 :</b> 상업회사의 집행인 총 수의 절반뿐 아니라 이사회의 단독 집행인 또는 회장은 회사 계약 또는 정관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루마니아 시민이어야 함. 상업회사 감사와 그 대리인의 과반수는 루마니아 시민이어야 함.</p> <p><b>스 :</b> (스웨덴에 법적 실체를 설립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회사는 독립적인 경영진과 별도의 회계를 가진 스웨덴에서 설립된 지점을 통하여 상업적 활동을 수행해야 함. 1년 미만의 준속기간을 가진 건설 프로젝트는 지점을 설립하거나 상주 대표를 임명하는 요건으로부터 면제됨. 유한회사(합자주식회사)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설립자에 의해 설립될 수 있음. 설립자 또는 설립자들은 스웨덴에 거주하거나 스웨덴인인 법적 실체여야 함. 제휴는 각 동업자가 스웨덴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설립주체가 될 수 있음. 유사한 조건이 모든 다른 형태의 법적 실체의 설립에 적용됨.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50퍼센트 이상이 스웨덴에 거주해야 함. 스웨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또는 스웨덴 시민으로서 스웨덴에서 상업적 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한 활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주 대표를 지방 당국에 등록해야 함. 일정한 경우에 필요 없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 거주요건은 면제될 수 있음.</p> <p><b>베 :</b> 대한민국 회사의 지점 설립은 최소 1년간 원적지국에서 모회사가 법원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함.</p> <p><b>슬 :</b> 기업을 대표하여 행동하도록 위임받은 인으로서 상업 등기소에 그 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자연인은 슬로바키아에서의 거주 허가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모든 분야	<p><b>투자</b></p> <p><b>서</b> : 외국 정부 및 외국의 공적 실체<sup>9</sup>의 직접적인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회사 또는 그 밖의 실체를 통한, 스페인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사전 인가가 필요함.</p> <p><b>불</b> : 공공(회원국 또는 지자체)의 보유 지분이 총 주식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인가가 필요함. 회원국 또는 공공의 재산의 이용 또는 사용과 관련된 일정한 경제활동은 양허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양허계약을 조건으로 함. 외국인 투자자는 민영화에 참여할 수 없음. 외국인 투자자 및 대한민국의 자본참여에 의해 통제를 받는 불가리아 법인은 a) 영해,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부터 천연자원을 시굴, 개발 또는 채굴하고 b) "a)"에 명시된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에 지배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가 요구됨.</p> <p><b>프</b> : 기존 프랑스 기업의 지분 또는 의결권의 33.33퍼센트를, 또는 상장된 프랑스 회사의 지분 또는 의결권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대한민국인의 구매는 다음의 규제를 조건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매출이 7천6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프랑스 기업에는 이러한 액수가 만족된다는 사전 통지 및 증명 후 15일이 경과한 후 7백6십만 유로 미만의 투자가 자유로움.</li> <li>- 사전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한 후 경제부 장관이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투자 연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인가는 목시적으로 그 밖의 투자에도 부여됨.</li> </ul> <p>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보유는 프랑스 정부가 개별 사안별로 결정하는, 공공에 제공되는 지분의 변동 가능한 총량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일정한 상업, 산업, 기술적 활동에서 설립을 위하여 경영 이사가 상시 거주 허가 보유자가 아닌 경우, 구체적인 인가가 요구됨.</p>

<sup>9</sup> 그러한 투자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체에 대한 비경제적 이익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b>핀</b> : 대한민국 소유자가 주요 핀란드 회사 또는 주요 핀란드 사업체(1천명 초과를 고용하거나 연매출이 1억6천8백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자산총액<sup>10</sup>이 1억6천8백만 유로를 초과)의 의결권의 3분의 1일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하는 지분 취득은 핀란드 당국의 확인을 조건으로 함. 중요한 국가적 이익이 손상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 확인이 거부될 수 있음. 이러한 제한은 통신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p> <p><b>형</b> : 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에 대한 대한민국인 지분 보유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b>이</b> : 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거나 유지될 수 있음. 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의 의결권은 일정 경우에 제한될 수 있음. 이 협정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방위, 운송, 통신 및 에너지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의 많은 지분의 취득은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p>
모든 분야	<p><b>지리적 구역</b></p> <p><b>핀</b> : 올란드 제도에서는, 올란드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올란드 제도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는 법인의 설립권에 제한이 있음.</p>

---

<sup>10</sup> 자산총액, 또는 부채총액에 더하여 자본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1. 농업, 수렵업 및 임업</b>	
<b>A. 농업, 수렵업</b> (ISIC 개정판 3.1: 011, 012, 013, 014, 015)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sup>11</sup> 는 제외	오, 크, 형, 물, 루 : 농업활동에 대하여 약속 안함. 사 : 대한민국 투자자의 지분 보유는 49퍼센트까지만 허용됨. 프 : 대한민국 국민의 농업기업 설립 및 대한민국 투자자의 포도밭 취득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 아 : 대한민국 거주자가 밀가루 제분 활동을 위하여 설립을 하는 것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
<b>B. 임업 및 벌목업</b> (ISIC 개정판 3.1: 020)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sup>12</sup> 는 제외	불 : 벌목 활동에 대하여 약속 안함.
<b>2. 어업 및 양식업</b> (ISIC 개정판 3.1: 0501, 0502)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sup>13</sup> 는 제외	약속 안함.

<sup>11</sup>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사업서비스의 6.F.f) 및 6.F.g)에 기재됨.

<sup>12</sup>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사업서비스의 6.F.f) 및 6.F.g)에 기재됨.

<sup>13</sup>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사업서비스의 6.F.f) 및 6.F.g)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3. 광업 및 채석업<sup>14</sup></b>	
<b>A. 석탄, 갈탄의 채광; 토탄의 채광</b> (ISIC 개정판 3.1: 10)	유 : 유럽연합의 석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량 점유율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유럽연합 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 <sup>15</sup> 되는 법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직접 지점 설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대하여 약속 안함.
<b>B.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sup>16</sup></b> (ISIC 개정판 3.1: 1110)	
<b>C. 금속 광업</b> (ISIC 개정판 3.1: 13)	
<b>D. 기타 광업 및 채석업</b> (ISIC 개정판 3.1: 14)	

<sup>14</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sup>15</sup> 법인은 다른 자연인 또는 다른 법인이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됨. 특히, 법인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sup>16</sup> 19.A 하의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석유 및 가스전에서 요금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광업 부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b>4. 제조업<sup>17</sup></b>	
<b>A. 음식료품 제조업</b> (ISIC 개정판 3.1: 15)	제한 없음.
<b>B. 담배제품 제조업</b> (ISIC 개정판 3.1: 16)	제한 없음.
<b>C. 직물류 제조업</b> (ISIC 개정판 3.1: 17)	제한 없음.
<b>D. 의복 제조업; 모피의 가공 및 염색</b> (ISIC 개정판 3.1: 18)	제한 없음.
<b>E. 가죽의 무두질 및 가공; 가방, 핸드백, 안장, 마구류 및 신발류 제조업</b> (ISIC 개정판 3.1: 19)	제한 없음.

<sup>17</sup> 이 분야는 사업서비스의 6.F.h)에 기재된 제조업 부수 자문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F. 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목제품, 코르크 제품 제조업; 고공업 및 조 물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0)	제한 없음.
G.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1)	제한 없음.
H. 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사업 <sup>18</sup> (ISIC 개정판 3.1: 22,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업은 제외 <sup>19</sup> )	이 :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적 요건이 있음. 크 : 거주요건이 있음.
I. 코크스 제조로 제품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31)	제한 없음.

<sup>18</sup> 이 분야는 제조활동에 제한되며, 시청각 관련 또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함.

<sup>19</sup>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는 사업서비스의 6.F.p)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J. 석유 정제품 제조업 <sup>20</sup> (ISIC 개정판 3.1: 232)	유 : 유럽연합의 석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량 점유율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유럽연합 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 <sup>21</sup> 되는 법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직접 지점 설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K. 폭발물질 제조업을 제외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 폭발물질 제조업 제외)	제한 없음.
L.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5)	제한 없음.
M.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6)	제한 없음.
N. 제1차 금속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7)	제한 없음.

<sup>20</sup> 공의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sup>21</sup> 법인은 다른 자연인 또는 다른 법인이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됨. 특히, 법인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b>분야 또는 하위 분야</b>	<b>유보 사항의 기술</b>
O. 기계류 및 장비를 제외한 조립금  속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8)	제한 없음.
P. 기계 제조업	
a) 일반목적의 기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1)	제한 없음.
b) 무기 및 탄약을 제외한 특수목적  기계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21, 2922, 29 23, 2924, 2925, 2926, 2929)	제한 없음.
c)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가정  용구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3)	제한 없음.
d) 사무, 회계 및 계산용 기계 제조 업  (ISIC 개정판 3.1: 30)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e)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전기 기계류 및 장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1)	제한 없음.
f)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기기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2)	제한 없음.
Q.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3)	제한 없음.
R.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4)	제한 없음.
S. 기타 (비군사용) 운송장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5, 군함, 군용 항공기 및 기타 군사용 운송장비 제외)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T. 가구 제조업;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61, 369)	제한 없음.
U. 재활용 (ISIC 개정판 3.1: 37)	제한 없음.
5. 전기, 가스, 증기 및 온수의 생산과 자체적 운송 및 유통 <sup>22</sup> (원자력 기반 전력 생산은 제외)	
A. 전력생산, 전력의 자체적 운송 및 유통 (ISIC 개정판 3.1: 4010의 일부 <sup>23</sup> )	유 : 약속 안함.

<sup>22</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sup>23</sup>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의 운영은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기체 연료 생산, 기체 연료의 자체적 유통 (ISIC 개정판 3.1: 4020의 일부 <sup>24)</sup>	유 : 약속 안함.
C. 증기 및 온수 생산, 증기 및 온수의 자체적 유통 (ISIC 개정판 3.1: 4030의 일부 <sup>25)</sup>	유 : 유럽연합의 석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량 점유율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유럽연합 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 <sup>26</sup> 되는 법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직접 지점 설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sup>24</sup>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및 기체 연료의 운송,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가스의 운송 및 유통, 그리고 천연가스 및 기체 연료의 판매는 포함하지 아니함.

<sup>25</sup>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증기 및 온수의 운송 및 유통과 증기 및 온수의 판매는 포함하지 아니함.

<sup>26</sup> 법인은 다른 자연인 또는 다른 법인이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됨. 특히, 법인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6.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861 <sup>27</sup> )	<p><b>오</b> :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자격을 지닌 대한민국 변호사의 지분 참여 및 법무회사의 수익에 대한 공유분은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대한민국 변호사는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p> <p><b>벨</b> : 비형사사건에서 “최고법원(<i>Cour de cassation</i>)”에서 대리하는 데에는 쿼터가 적용됨.</p> <p><b>크</b> : 크로아티아 변호사협회(Croatian title “odvjetnici”)의 구성원만이 법원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음. 변호사협회의 구성원은 시민권을 요함.</p> <p><b>프</b> : “최고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e la Cour de Cassation</i>)”와 “헌법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u Conseil d'Etat</i>)”의 직종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은 쿼터를 조건으로 함</p>

<sup>27</sup> 법률자문서비스, 법률대리서비스, 법적 중재 및 화해/조정 서비스, 그리고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를 포함함.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국제공법, 유럽연합법 및 서비스공급자 또는 그 소속직원이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관할 지역의 법과 관련하여서만 인가됨. 그리고 다른 서비스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 가능한 면허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함. 국제공법 및 외국법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이러한 면허 요건 및 절차는 특히 국내 윤리규정의 준수, (활동국 직명에 대한 인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원자격국 직명의 사용, 보험 요건,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단순 등록 또는 적성검사를 통한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간이 가입, 활동국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주소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유럽연합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의 관련 회원국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법정 및 기타 유럽연합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및 국내 절차법 사무 처리를 수반하기 때문임.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경우 변호사협회에 완전히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 변호사가, 동 변호사가 활동하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국민 또는 동 국가에 속하는 의뢰인을 민사절차에서 대리하는 것이 허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공중, “집행관 업무( <i>huissiers de justice</i> )” 또는 다른 “공무원 업무( <i>officiers publics et ministériels</i> )”와 같이 공공의 기능을 위임받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법률자문,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는 제외	<p><b>덴</b> : 덴마크 자격증을 지닌 변호사와 덴마크에 등록된 법무회사만이 덴마크 법무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음. 덴마크 자격증을 지닌 변호사만이 덴마크 법무회사의 임원이 되거나 경영진이 될 수 있음. 덴마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덴마크 법률시험에 요구됨.</p> <p><b>프</b> : 일정한 유형의 법적 형태 (“변호사 조합(<i>association d'avocats</i>)” 및 “변호사 참여 회사(<i>société en participation d'avocat</i>)”)는 프랑스 변호사협회에 완전하게 가입된 변호사를 위하여 유보됨. 프랑스법 또는 유럽연합법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회사 지분의 75퍼센트를 보유한 파트너들의 최소 75퍼센트는 프랑스 변호사협회에 완전하게 가입된 변호사여야 함.</p> <p><b>헝</b> : 상업적 주재는 형가리 변호사(“소송자격이 있는 변호사(<i>ügyvéd</i>)”) 또는 변호사 사무소(“소송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설립한 사무소(<i>ügyvédi iroda</i>)”)와 제휴형태를 취하거나 대표사무소 형태를 취해야 할 것임.</p> <p><b>폴</b> : 유럽연합 변호사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도 이용 가능하나, 외국 변호사는 등록제휴 및 유한조합의 법적 형태만 이용할 수 있음.</p>
b) 1. 회계 및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CPC 86212 “감사서비스” 제외, CPC 86213, CPC 86219 및 CPC 86220)	<p><b>오</b> : 대한민국 회계사(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함)의 오스트리아 법적 실체에의 지분 참여 및 수익에 대한 배분은, 그 회계사가 오스트리아 직종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b>사</b> : 시장접근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p> <p><b>덴</b> : 덴마크의 인가된 회계사와 제휴를 하기 위하여 외국 회계사는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2. 감사서비스 (CPC 86211 및 86212 회계서비스 제외)	<p><b>오</b> : 대한민국 감사인(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함)의 오스트리아 법적 실체에의 지분 참여 및 수익에 대한 배분은, 그 감사인이 오스트리아 직종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 25페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b>사</b> : 시장접근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상황</p> <p><b>체 및 슬</b> : 최소 60페센트의 지분 또는 의결권이 국민에게 유보됨.</p> <p><b>덴</b> : 덴마크의 인가된 회계사와 제휴를 하기 위하여 외국 회계사는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함.</p> <p><b>핀</b> : 핀란드 책임회사의 감사인 중 최소 1인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이 있음.</p> <p><b>크</b> : 법인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감사를 제외하고 제한 없음.</p> <p><b>라</b> : 서약감사인 상업회사에서는 유럽연합의 서약감사인 또는 서약감사인 상업회사가 의결 지분의 50페센트를 초과하여 소유 해야 함.</p> <p><b>리</b> : 75페센트 이상의 지분이 유럽연합 감사인 또는 감사회사에 소유되어야 함.</p> <p><b>스</b> : 스웨덴에서 승인된 감사인만이 일정한 법적 실체, 특히 모든 유한회사에서 법적 감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한 감사인들만이 (공식적 목적으로) 자격있는 감사를 행하는 회사에서 주주가 되거나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음. 승인을 위해 거주가 요구됨.</p> <p><b>베</b> : 감사회사에서 외국인의 지분은 총 지분의 49페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세무자문서비스 (CPC 863 <sup>28</sup> )	<p><b>오</b> : 대한민국 조세 자문사(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함)의 오스트리아 법적 실체에의 지분 참여 및 수익에 대한 배분은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한 제한은 동 조세 자문사가 오스트리아 직종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p> <p><b>사</b> : 시장접근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p>
d) 건축설계서비스 및 e)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1 및 CPC 8674)	<p><b>불</b> :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대한민국 투자자는 불가리아 투자자와 제휴하여 또는 하청업체로서 활동해야 함.</p> <p><b>라</b> : 건축설계서비스의 경우, 모든 범위의 법적 책임을 지는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프로젝트 계약을 맺을 권리를 얻기 위하여 라트비아에서 프로젝팅 분야에 3년간 활동해야 하며, 대학학위가 요구됨.</p>
f)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g)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및 CPC 8673)	<p><b>불</b> :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대한민국 투자자는 불가리아 투자자와 제휴하여 또는 하청업체로서 활동해야 함.</p>

<sup>28</sup> 1.A.a) 법률서비스에 기재된 세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h) 의료서비스(심리학자 포함) 및 치의료서비스 (CPC 9312 및 CPC 85201의 일부)	<p>사, 예, 편, 몰 : 약속 안함.</p> <p>오 : 치의료서비스, 심리학자 및 심리치료사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그리고, 치의료서비스, 심리학자 및 심리치료사에 대하여 제한 없음.</p> <p>독 : 의사와 치과의사가 공공보험 가입자를 치료하도록 인가를 받은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의 대상이 됨. 주요 기준 : 일정 지역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의 부족</p> <p>프 : 유럽연합 투자자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투자자는 “자유 영업 회사(<i>société d'exercice libéral</i>)” 및 “전문인 회사(<i>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i>)”만을 이용할 수 있음.</p> <p>크 :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인은 직능단체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p> <p>라 :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일정 지역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의 부족</p> <p>불, 리 : 서비스의 공급은 인구와 기존의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수립되는 보건서비스 계획에 근거한 인가를 조건으로 함.</p> <p>베 : 사회의료, 위생, 역학(疫學), 의료/생태 서비스, 혈액공급, 혈액준비, 이식 및 검시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영 : 국립보건서비스 소속 의사를 위한 설립은 의료 인력계획을 조건으로 함.</p>
i) 수의료서비스 (CPC 932)	<p>오, 사, 예, 몰, 베 : 약속 안함.</p> <p>불 :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p> <p>형 :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그 분야의 노동시장 조건</p> <p>프 : “자유 영업 회사(<i>société d'exercice libéral</i>)” 또는 “전문인 회사(<i>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i>)”만을 통해서만 공급</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j) 1. 조산원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p><b>불, 체, 편, 형, 물, 베, 슬</b> : 약속 안함.</p> <p><b>프</b> : 유럽연합 투자자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투자자는 “자유 영업 회사(<i>société d'exercice libéral</i>)” 및 “전문인 회사(<i>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i>)”만을 이용할 수 있음.</p> <p><b>크</b> :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인은 직능단체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p> <p><b>리</b> :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될 수 있음. 주요 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p>
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p><b>오</b>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활동만 허용됨.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실존분석적 정신요법사, 식이요법사 및 영양사</p> <p><b>불, 물</b> : 약속 안함.</p> <p><b>편, 베</b> :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b>프</b> : 유럽연합 투자자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투자자는 “자유 영업 회사(<i>société d'exercice libéral</i>)” 및 “전문인 회사(<i>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i>)”만을 이용할 수 있음.</p> <p><b>크</b> :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인은 직능단체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p> <p><b>리</b> :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될 수 있음. 주요 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p> <p><b>라</b> : 외국인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일정 지역의 고용 상황</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k) 의약품 소매 및 의료·정형외과 상품 소매 (CPC 63211) 약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sup>29</sup>	오, 불, 사, 핀, 물, 폴, 루, 스, 베 : 약속 안함. 벨, 독, 텐, 에, 서, 프, 이, 크, 형, 아, 라, 포, 슬 :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약국의 지리적 밀도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PC 84)	제한 없음.
C. 연구개발서비스 <sup>30</sup>	
a) 자연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유 : 공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과 유럽 연합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법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b) 사회·인문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2 심리학자 제공 서비스 제외 <sup>31</sup> )	제한 없음.

<sup>29</sup> 그 밖의 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일반대중에 대한 의약품의 공급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 가능한 면허 및 자격 요건과 절차를 조건으로 함.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약사에게 유보되어 있음. 일부 회원국의 경우, 치방약의 공급만이 약사에게 유보되어 있음.

<sup>30</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sup>31</sup> 6.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에 기재된 CPC 85201의 일부임.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 (CPC 853)	유 : 공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과 유럽연합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법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D. 부동산서비스 <sup>32</sup>	
a) 자가 또는 임차 재산 관련 (CPC 821)	제한 없음.
b) 요금 또는 계약에 기반 (CPC 822)	제한 없음.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a) 선박 관련 (CPC 83103)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애, 핀, 프, 그, 헝, 아, 이, 리, 라, 뤽,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리 : 선박은 리투아니아인 자연인 또는 리투아니아에 설립된 회사에 의해 소유되어야 함. 스 : 대한민국인이 선박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스웨덴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스웨덴의 영향력이 지배적임이 증명되어야 함.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유 : 유럽연합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항공사에 면허를 부여한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야 함. 항공기는 특정한 국적조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소유 및 통제(이사의 국적을 포함)에 관한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해야 함. 단기 리스 계약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

<sup>32</sup> 관련 서비스는 부동산 대리인 직종과 관련되며, 자연인 및 법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모든 권리 및/또는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그 밖의 운수장비 관련 (CPC 83101, CPC 83102 및 CPC 83105)	제한 없음.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 CPC 83107, CPC 83108 및 CPC 83109)	제한 없음.
e) 개인·가정물품 관련 (CPC 832)	제한 없음. 단, 벨 및 프는 CPC 83202에 대하여 약속 안함.
f) 통신장비임대 (CPC 7541)	제한 없음.
F. 기타 사업서비스	
a) 광고 (CPC 871)	제한 없음.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CPC 864)	제한 없음.

<b>분야 또는 하위 분야</b>	<b>유보 사항의 기술</b>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제한 없음.
d)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CPC 866)	형 : 중재 및 조정 서비스(CPC 86602)에 대하여 약속 안함.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sup>33</sup> (CPC 8676)	제한 없음.
f) 농업, 수렵업 및 임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1의 일부)	제한 없음.
g)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2의 일부)	제한 없음.

<sup>33</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은 마케팅 승인 또는 이용 승인의 부여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에 적용됨.(예: 자동차 검사, 식품 검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h) 제조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4의 일부 및 CPC 885의 일부)	제한 없음.
i) 직업소개, 파견 서비스	
i) 1. 임원급소개서비스 (CPC 87201)	불, 사, 체, 독, 예, 편, 크, 라, 리, 몰, 폴, 포, 루, 슬, 베 : 약속 안함. 서 : 국가 독점
i) 2. 직업소개서비스 (CPC 87202)	오, 불, 사, 체, 예, 편, 크, 라, 리, 몰, 폴 포, 루, 슬 : 약속 안함. 벨, 서, 프, 이 : 국가 독점 독 :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노동 시장의 상황 및 발전
i) 3. 사무지원인력 파견서비스 (CPC 87203)	오, 불, 사, 체, 독, 예, 편, 크, 라, 리, 몰, 폴 포, 루, 슬, 베 : 약속 안함. 이 : 국가 독점
i) 4. 모델에이전시서비스 (CPC 87209의 일부)	제한 없음.
i) 5. 가사보조인력, 기타 상업 또는 산업근로자, 간호 및 기타 인력 파견 서비스 (CPC 87204, 87205, 87206, 87209)	형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약속 안함. 형 :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j) 1. 조사서비스 (CPC 87301)	벨, 불, 사, 체, 독, 서, 예, 프, 그, 크, 형, 아, 이, 라, 리, 륙, 몰, 네, 폴, 포, 루, 슬, 베 : 약속 안함.
j) 2. 경비서비스 (CPC 87302, CPC 87303, CPC 87304 및 CPC 87305)	덴 :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국적 및 거주요건이 있음. 공항수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사, 체, 예, 편, 라, 리, 몰, 폴, 루, 베, 슬 : 국민과 국가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면허가 부여될 수 있음. 서 : 시장접근은 사전 인가를 조건으로 함. 인가 부여 시 내각은 능력, 직업적 일체성과 독립성, 그리고 주민 안보 및 공공 질서를 위하여 제공되는 보호가 충분한지를 고려함. 크 : 약속 안함.
k) 과학,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sup>34</sup> (CPC 8675)	프 :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탐사 및 예비조사를 위한 구체적 인가가 요구됨.
l) 1. 선박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제한 없음.
l) 2. 철도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라 : 국가 독점 스 : 투자가 자신의 터미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를 의도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됨. 주요 기준: 공간 및 수용능력 제한

<sup>34</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은 광업(예: 광물, 석유 및 가스)과 관련된 일정한 활동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 3.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 차량 및 도로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6112, CPC 6122, CPC 8867의 일부 및 CPC 8868의 일부)	스 : 투자가 자신의 터미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를 의도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됨. 주요 기준 : 공간 및 수용능력 제한
I) 4.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제한 없음.
I) 5. 금속제품, (비)사무용) 기계, (비) 운송 및 비사무용) 장비 및 개인·가정용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 <sup>35</sup> (CPC 633, CPC 7545, CPC 8861, CPC 8862, CPC 8864, CPC 8865 및 CPC 8866)	제한 없음.
m) 빌딩청소서비스 (CPC 874)	제한 없음.

<sup>35</sup>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6112, 6122, 8867 및 CPC 8868)는 6.F.1)1.부터 6.F.1)4.까지에 기재됨.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기 및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845)는 6.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n) 사진서비스 (CPC 875)	제한 없음.
o) 포장서비스 (CPC 876)	제한 없음.
p) 인쇄 및 출판 (CPC 88442)	<p>크 : 출판업자와 편집국에 대한 거주요건이 있음.</p> <p>리, 라 : 출판 분야의 설립권은 국가에 등록된 법인에만 부여됨(지점은 불가).</p> <p>풀 : 신문 및 잡지의 편집장에 대해서 국적요건이 있음.</p> <p>스 :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출판자 및 소유자에 대해서 거주요건이 있음.</p>
q) 국제회의서비스 (CPC 87909의 일부)	제한 없음.
r) 1.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p>텐 : 공인 번역사 및 통역사에 대한 인가는 그들의 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p> <p>크 : 크로아티아 법원에서/법원을 위한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풀 : 서약한 통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불, 형, 슬 : 공식 번역 및 통역에 대하여 약속 안함.</p>
r) 2. 인테리어 디자인 및 기타 전문 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제한 없음.

<b>분야 또는 하위 분야</b>	<b>유보 사항의 기술</b>
r) 3. 수금대리서비스 (CPC 87902)	이, 포 : 투자자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r) 4. 신용조사서비스 (CPC 87901)	벨 : 소비자 신용데이터 뱅크의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이, 포 : 투자자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r) 5. 복제서비스 (CPC 87904 <sup>36</sup> )	제한 없음.
r) 6. 통신자문서비스 (CPC 7544)	제한 없음.
r) 7. 전화응답서비스 (CPC 87903)	제한 없음.

---

<sup>36</sup> CPC 88442에 해당하며 6.F.p)에 기재된 인쇄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7. 커뮤니케이션서비스</b>	
<b>A.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b> 목적지가 국내 또는 외국을 불문하고 다음에 열거된 하위 분야 목록에 따른 우편 품목 <sup>37</sup> 의 취급 <sup>38</sup> 과 관련된 서비스: (i)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와 다이렉트 메일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 <sup>39</sup> 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가 기재된 통신문의 취급, (ii) 주소가 기재된 소포 및 소화물 <sup>40</sup> 의 취급, (iii) 주소가 기재된 출판물 <sup>41</sup> 의 취급,	제한 없음.

<sup>37</sup> “우편 품목”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영자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상업적 운영자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sup>38</sup> “취급”이란 수집, 분류, 운송 및 배달 등의 활동을 말함.

<sup>39</sup> 예를 들어 서장, 엽서

<sup>40</sup> 서적, 카탈로그가 이에 포함됨.

<sup>41</sup> 잡지, 신문 및 정기간행물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iv) 등기 또는 보험가입 우편물로서      (i)부터 (iii)에 언급된 품목의 취급, (v)      (i)부터 (iii)에 언급된 품목의 특급배달      서비스<sup>42</sup>, (vi) 주소가 미기재된 품목의      취급, 그리고 (vii) 문서 교환<sup>43</sup></p> <p>그러나 하위 분야 (i), (iv) 및 (v)는 중      량이 350그램 미만일 경우 그 가격이      공공 기본요금의 5배 미만인 통신품목  <sup>44</sup> 및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사      용되는 등기우편 업무에 해당하는 서      비스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제외된      다.</p>	

<sup>42</sup> 특급배달서비스는 더욱 빠른 속도와 신뢰성과 함께 발송지로부터의 수집, 수취인에 대한 개별 배달, 종적 조회, 배송 중 도착지 및 수취인 변경 가능성, 수취 확인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

<sup>43</sup> 제 3 자에 의한 운송 및 임시장소의 제공을 포함하여 이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간 우편품목을 상호 교환하는 자체배달을 허용하는 수단의 제공. “우편 품목”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영자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상업적 운영자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sup>44</sup> “통신품목”이란 발송자가 자체에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한 주소에 전달 및 배달되는, 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에 서면으로 기재된 통신을 의미함. 서적, 카탈로그, 신문 및 정기간행물은 통신품목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PC 751의 일부, CPC 71235 <sup>45</sup> 의 일부 및 CPC 73210 <sup>46</sup> 의 일부)	
<b>B. 통신서비스</b> 이 서비스는 그 운송을 위하여 통신서비스가 필요한 컨텐츠의 제공으로 구성된 경제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함.	
a)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된 모든 서비스 <sup>47</sup> , 방송 <sup>48</sup> 은 제외	제한 없음 <sup>49</sup> .

<sup>45</sup>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육상 운송

<sup>46</sup> 우편물품의 자체 항공 운송

<sup>47</sup> 이 서비스는 6.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된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CPC 843의 일부)을 포함하지 않음.

<sup>48</sup> 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 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사업자 간의 중계연결은 포함하지 아니함.

<sup>49</sup>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은 일정한 통신 운영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유지함. 그러한 회원국은 미래에도 이러한 지분 보유를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이는 시장 접근 제한이 아님. 벨기에에서 벨가콤에 대한 정부의 지분 보유와 의결권은 정부기업의 개혁에 관한 1991년 3월 21일자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현재의 사례와 같이 입법권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위성방송 전송서비스 <sup>50</sup>	<p><b>유</b> : 이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는 전기 통신에 대한 유럽연합 규제 틀에 따라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 이익 목적을 보호하는 의무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p> <p><b>벨</b> : 약속 안함.</p>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511, CPC 512, CPC 513, CPC 514, CPC 515, CPC 516, CPC 517 및 CPC 518)	제한 없음.
9. 유통서비스 (무기, 총포탄, 폭발물 및 그 밖의 전쟁 물자는 제외) 다음에 언급된 모든 하위 분야 <sup>51</sup>	<p><b>오</b> : 불꽃제조 상품, 가연성 품목 및 폭발 장치, 그리고 독성 물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의약품 및 담배제품의 유통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내에 본부를 가진 유럽연합 법인에게만 부여 될 수 있음.</p> <p><b>핀</b> : 알콜성 음료 및 의약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b>크</b> : 담배제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p>

<sup>50</sup> 이 서비스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되는 통신서비스(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위성을 통한, 간접없는 일련의 전송)를 포함함. 이 서비스는 위성서비스 이용의 판매를 포함하나 가정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sup>51</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화학제품, 의약품, 의료 및 외과 기구, 의료 물질, 의료용 도구와 같은 의료용품, 군사장비 및 귀금속 (그리고 보석)의 유통에 적용되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담배 및 담배제품 및 알콜성 음료의 유통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A. 위탁증개인서비스	
a)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위탁증개인서비스 (CPC 61111의 일부,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제한 없음.
b) 기타 위탁증개인서비스 (CPC 621)	제한 없음.
B. 도매서비스	
a)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도매서비스 (CPC 61111의 일부,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제한 없음.
b) 통신단말기 도매서비스 (CPC 7542의 일부)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기타 도매서비스 (CPC 622, 에너지제품의 도매서비스 <sup>52</sup> 는 제외)	프, 이 : 담배에 대한 국가 독점 프 : 도매 약국의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약국의 지리적 밀도
C. 소매서비스 <sup>53</sup>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소매서비스 (CPC 61112,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통신단말기 소매서비스 (CPC7542의 일부) 식품 소매서비스 (CPC631)	서, 프, 이 : 담배에 대한 국가 독점 벨, 볼, 텐, 프, 이, 몰, 포 : 백화점(프의 경우 대형 매장에 대해서만)에 대한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기존 매장의 수와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및 새로운 고용 창출 아, 스 : 알콜성 음료의 소매에 대하여 약속 안함. 스 : 판매지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의류, 신발 및 식품의 일시적인 판매에 대한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 주요 기준 : 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 매장에 대한 영향

<sup>52</sup> CPC 62271 을 포함하는 이 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D에 기재됨.

<sup>53</sup> 사업서비스의 6.B.및 6.F.1)에 기재된 유지 및 보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에너지서비스의 19.E. 및 19.F에 기재된 에너지 제품의 소매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그 밖의 (비에너지) 상품의 소매서비스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상품 소매서비스 제외 <sup>54</sup> (CPC 63211 및 CPC 63297을 제외한 CPC 632)	
D. 프랜차이징 (CPC 8929)	제한 없음.
10. 교육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A. 초등교육서비스 (CPC 921) B. 중등교육서비스 (CPC 922) C. 고등교육서비스 (CPC 923)	<p>유 : 교육네트워크에 대한 사적 운영자의 참여는 양허를 조건으로 함.</p> <p>오 : 고등교육서비스 및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성인 학교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불 : 외국인인 자연인 및 외국 협회의 초등 및/또는 중등 교육서비스 공급과, 고등교육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체, 슬 :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중등교육 후 기술 및 직업 교육서비스(CPC 92310)를 제외하고 고등교육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사, 핀, 몰, 루, 스 : 약속 안함.</p> <p>크 : 초등교육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CPC 921). 중등교육서비스에 대하여: 법인에 대하여 제한 없음.</p>

<sup>54</sup>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상품의 소매는 6.A.k)의 전문직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성인교육서비스 (CPC 924)	<p>그 : 초등 및 중등 학교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국가 공인 졸업장을 부여하는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서, 이 : 공인 졸업장 또는 학위를 발급하도록 인가된 사립 대학의 설립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관련 절차에는 의회의 권고가 포함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설립의 밀도</p> <p>형, 슬 : 설립되어 있는 학교의 수는 면허를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 지방 당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고등학교 및 그 밖의 고등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중앙 당국)</p> <p>라 : 장애학생을 위한 기술 및 직업 중등 학교형 교육서비스(CPC 9224)와 관련된 교육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베 : 초등교육에 대하여 약속 안함. 중등 및 고등학교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p>
E. 기타 교육서비스 (CPC 929)	<p>오, 벨, 불, 사, 독, 텐, 서, 에, 편, 프, 그, 형, 아, 이, 라, 리, 륙, 몰, 네, 폴, 포, 류, 베, 스, 영 : 약속 안함.</p> <p>체, 슬 : 교육네트워크에 대한 사적 운영자의 참여는 양허를 조건으로 함.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 요건이 있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11. 환경서비스<sup>55</sup></b> A. 폐수서비스 (CPC 9401 <sup>56</sup> ) B. 고체/유해폐기물관리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운송은 제외 a) 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2) b) 위생 및 유사 서비스 (CPC 9403) C. 대기 및 기후 보호 (CPC 9404 <sup>57</sup> )	제한 없음.

<sup>55</sup> 공의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sup>56</sup> 하폐수서비스에 해당함.

<sup>57</sup> 배기가스 정화서비스에 해당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D. 토양 및 수질 개선과 정화        a) 오염 토양 및 수질 처리 및 개선        (CPC 9406의 일부<sup>58)</sup></p> <p>E. 소음 및 진동 저감        (CPC 9405)</p> <p>F.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        a)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        (CPC 9406의 일부)</p> <p>G. 기타 환경 및 부수 서비스        (CPC 9409)</p>	

---

<sup>58</sup>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의 일부에 해당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2. 금융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p><b>오</b> : 대한민국 보험자의 지점 사무소를 위한 면허는, 그 보험자가 대한민국에서 합자주식회사 또는 상호 보험 조합과 대응되거나 동등한 법적 형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거부됨.</p> <p><b>불, 서</b> : 불가리아 또는 스페인에 일정한 종류의 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을 설립하기 전에 대한민국 보험자는 최소 5년간 대한민국에서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운영하도록 인가를 받았어야 함.</p> <p><b>그</b> : 설립의 권리는 보험회사의 대표 사무소 또는 그 밖의 상설사무소의 설립을 포함하지 아니함. 단, 그 사무소가 대리점, 지점 또는 본점으로 설립된 경우는 제외함.</p> <p><b>핀</b> :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를 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발기인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최소 절반이 유럽연합 내에 거주지를 보유해야 함. 대한민국 보험자는 법정 연금 보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점으로서는 핀란드 내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p> <p><b>이</b> : 지점의 설립 인가는 궁극적으로 감독 당국의 평가를 조건으로 함.</p> <p><b>불, 폴</b> : 보험 중개업자에 대해서 국내 법인화가 필요함(지점은 불가).</p> <p><b>포</b> : 포르투갈 내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보험회사는 최소 5년의 사전 운영 경험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직접 지점 설립은 유럽연합 회원국법에 따라 형성된 회사를 위하여 유보되어 있는 보험 중개업을 위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함.</p> <p><b>슬</b> : 대한민국인은 합자주식회사의 형태로 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슬로바키아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현지법인을 통해 보험업을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p> <p><b>베</b> : 외국인 투자자는 보험회사의 민영화에 참여할 수 없음. 상호 보험 기관으로의 가입은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회사(지점은 불가)와 내국인인 자연인에 제한됨. 상담서비스 및 손해사정서비스에 대해서 법적 실체로서의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p> <p><b>스</b> : 스웨덴에 법인화되지 아니한 보험중개업체는 지점을 통하여만 설립될 수 있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p><b>유</b> : 유럽연합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회사만이 투자펀드 자산의 예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 계약형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본점 및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전문 관리회사를 설립해야 함.</p> <p><b>불</b> : 연금 보험은 법인화된 연금 보험 회사에 대한 지점 보유를 통해 수행되어야 함(지점은 불가). 경영위원회의 회장 및 이사회의 회장에게는 불가리아 내 영주가 요구됨.</p> <p><b>사</b> : 사이프러스 증권거래소 회원(증개사)만이 사이프러스에서 증권 중개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증개회사는 사이프러스 회사법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경우에만 사이프러스 증권거래소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음(지점 불가).</p> <p><b>크</b> : 크로아티아에서 중앙예탁기관(Central Depository Agency, CDA)이 유일한 공급자인 경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를 제외하고 제한 없음. CDA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비거주자에게 비차별적으로 부여될 것임.</p> <p><b>헝</b> : 대한민국 기관의 지점은 사적 연금 펀드 또는 벤처캐피탈의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되지 아니함.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헝가리 시민권자로서, 관련 외환규정에서 거주자로 인정되며 최소 1년 이상을 헝가리에 영주하여 온, 최소 2인의 이사를 포함함.</p> <p><b>아</b> : 집합투자기구가 계약형 투자신탁 및 변동자본회사(양도가능증권에 대한 집합투자업체인 UCITS는 제외)로 구성된 경우, 수탁인/예탁기관 및 관리회사는 아일랜드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 투자 유한조합의 경우 최소 1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아일랜드 내에 법인화해야 함. 아일랜드 증권거래소 회원이 되기 위하여 실체는 (a) 법인화 또는 파트너쉽을 통해 아일랜드에서 인가를 받고, 본점/등록사무소를 아일랜드 내에 보유하거나, (b) 투자 및 서비스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b>이</b> : 이탈리아에서 설립을 통하여 증권결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회사는 이탈리아에서 법인화 할 것이 요구됨(지점은 불가). 이탈리아에서 설립을 통하여 중앙증권예탁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인가받기 위하여 회사는 이탈리아에서 법인화할 것이 요구됨(지점은 불가). 유럽연합의 법령 상 조화된 UCITS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탁자/예탁기관은 이탈리아 또는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법인화를 하고 이탈리아에서 지점을 통해 설립할 것이 요구됨. 유럽연합의 법령 상 조화되지 아니한 UCITS의 관리 회사 역시 이탈리아에서 법인화할 것이 요구됨(지점은 불가). 유럽연합 내에 법적인 본점을 보유한, 은행, 보험사, 투자회사 및 유럽연합 입법 상 조화된 UCITS를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법인화한 UCITS만이 연금 자원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방문판매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개업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 내에 거주하는 인가된 금융판매원을 활용해야 함. 외국 중개업자의 대표사무소는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p> <p><b>리</b> : 자산관리의 목적 상 전문 관리회사로의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 리투아니아에 등록 사무소를 보유한 회사만이 자산 예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p> <p><b>포</b> : 연금기금 관리는 포르투갈에서 법인화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전문화된 회사 및 포르투갈에서 설립되고 생명보험 사업을 행하도록 인가받은 보험회사,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연금기금 관리를 위하여 인가된 실체 만이 공급할 수 있음. (비유럽연합 국가로부터의 직접 지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b>루</b> : 외국 기관의 지점은 자산관리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되지 아니함.</p> <p><b>슬</b> : 슬로바키아 내 투자서비스는 법에 따라 자기자본을 갖춘 합자주식회사의 법적 형태를 지닌 증권딜러, 투자펀드, 투자회사 및 은행이 제공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p> <p><b>베</b> : 민영화에 따른 은행 지분 보유 및 사적 연금기금(비강제 연금기금)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b>스</b> : 저축은행의 설립자는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자연인이어야 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3. 보건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sup>59</sup>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A. 병원서비스 (CPC 9311) B. 구급차서비스 (CPC 93192) C.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 (CPC 93193) D. 사회서비스 (CPC 933)	<p><b>유</b> : 보건 및 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사적 운영자의 참여는 양허계약을 조건으로 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될 수 있음. 주요 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운송시설, 인구밀도, 지리적 산포 및 새로운 고용 창출</p> <p><b>오, 베</b> : 구급차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b>불</b> : 병원서비스, 구급차서비스 및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b>사, 채, 편, 몰, 스, 슬</b> : 약속 안함.</p> <p><b>크</b> :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인은 직능단체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p> <p><b>형</b> :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b>풀</b> : 구급차서비스,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b>벨, 영</b> : 구급차서비스,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 및 조리원 및 요양원 그리고 양로원 외의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sup>59</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4.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CPC 641, CPC 642 및 CPC 643)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제외 <sup>60</sup>	<p>불 :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p> <p>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바, 카페 및 레스토랑에 적용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설립의 밀도</p> <p>크 : 국립 또는 자연 공원의 특정한 역사적 및 예술적 이익이 있는 보호구역 내의 장소는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의 승인 대상이 되며, 이는 거부될 수 있음.</p>
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여행매니저 포함) (CPC 7471)	<p>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p> <p>포 : 포르투갈에 회사 기반을 가진 상업 회사의 설립이 요구됨(지점에 대하여 약속 안함).</p>
C. 관광안내서비스 (CPC 7472)	제한 없음.

---

<sup>60</sup>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운송 부수 서비스 중 17.E.a) 지상조업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5.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제외)	
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극장, 라이브밴드, 서비스 및 디스코텍 포함) (CPC 9619)	<p>사, 체, 핀, 물,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p> <p>불 : 극장 공연물 제작자, 가수 그룹, 밴드 및 오케스트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1),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및 그 밖의 개인 예술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CPC 96192) 및 극장 부수 서비스(CPC 96193)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에 : 영화관서비스를 제외하고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CPC 96199)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라 : 영화관운영서비스(CPC 96199의 일부)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p>
B. 뉴스제공서비스 (CPC 962)	<p>프 : 프랑스어로 출판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보유는 그 회사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뉴스통신사 : 약속 안함. 단, 대한민국 뉴스통신사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지사 또는 지국을 설립할 수 있음.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뉴스를 배포할 수 없음.</p> <p>불, 사, 체, 에, 형, 리, 물, 루, 폴, 베, 슬 : 약속 안함.</p> <p>포 : “Sociedade Anonima”의 법적 형태로 포르투갈에서 법인화된 뉴스회사는 명목주식의 형태로 사회 자본을 보유하여야 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sup>61</sup> (CPC 963)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예, 펀프, 그, 크, 형, 아, 이, 라, 륙,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오, 리 : 사적 운영자의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지분 보유는 허가 또는 면허를 조건으로 함.
D. 스포츠서비스 (CPC 9641)	오, 베 : 스키학교서비스 및 산악가이드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사, 체, 예, 라, 몰, 폴, 루, 슬 : 약속 안함.
E. 레크리에이션 파크 및 해변 서비스 (CPC 96491)	제한 없음.

<sup>61</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6. 운송서비스	
A. 해상운송 <sup>62</sup>	
a) 국제여객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1 <sup>63</sup> )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록,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b) 국제화물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2 <sup>64</sup> )	

<sup>62</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항만서비스 및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해운서비스에 적용됨.

<sup>63</sup>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sup>64</sup>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내수운송	
a) 여객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21 <sup>65)</sup> b) 화물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22 <sup>66)</sup>	<p><b>유</b> : 기준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라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기반한 조치는, 관련된 국가에 기반하고 소유와 관련한 국적조건을 충족하는 운영자를 위하여 일정한 운수권을 유보함. 라인강 운송에 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을 조건으로 함.</p> <p><b>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륙,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b>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b>오</b> : 자연인이 해운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법인이 설립하는 경우, 경영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국적 조건이 있음. 오스트리아에 해운회사로 등록 또는 상시 설립이 요구됨. 아울러, 사업주식과 반수를 유럽연합 시민이 보유해야 함.</p> <p><b>불</b>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p> <p><b>크</b> : 약속 안함.</p> <p><b>형</b> : 설립시 국가의 참여가 요구될 수 있음.</p> <p><b>핀</b> : 핀란드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p>

<sup>65</sup>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sup>66</sup>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C. 철도운송<sup>67</sup></b> a) 여객운송 (CPC 7111) b) 화물운송 (CPC 7112)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크 : 약속 안함.

---

<sup>67</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도로운송 <sup>68</sup>	
a) 여객운송 (CPC 7121 및 CPC 7122)	<p><b>유</b> : 외국인 투자자는 운영자 포함 비정기 버스 임대서비스를 제외하고 한 회원국 내에서 운송서비스(연안운송)를 공급할 수 없음.</p> <p><b>유</b> : 택시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 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p> <p><b>오, 불</b> : 베타적 권리 및/또는 인기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내에 본부를 가진 유럽연합 법인에만 부여될 수 있음.</p> <p><b>불</b>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p> <p><b>편, 라</b> : 인가가 요구되나, 외국 등록 운송수단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p> <p><b>라 및 스</b> : 설립된 실체는 국가에 등록된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됨.</p> <p><b>서</b> : CPC7122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 기준 : 국내 수요</p> <p><b>이, 포</b> : 리무진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 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p> <p><b>서, 아, 이</b> : 시외버스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 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p> <p><b>프</b> : 시외버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sup>68</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화물운송 <sup>69</sup> (CPC 7123,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운송은 제외 <sup>70</sup> )	오, 불 :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내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법인에만 부여될 수 있음. 불 : 직접 지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핀, 라 : 인가가 요구되나, 외국 등록 운송수단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라 및 스 : 설립된 실체는 국가에 등록된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됨. 이, 슬 :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 기준 : 국내 수요
E. 연료 외의 상품의 파이프라인 운송 <sup>71</sup> (CPC 7139)	오 : 배타적 권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내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법인에만 부여될 수 있음.

<sup>69</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일부 회원국에 적용됨.

<sup>70</sup> CPC 71235 의 일부로서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중 7.A.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 기재됨.

<sup>71</sup>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B에 기재됨.

<sup>72</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7. 운송 부수 서비스 <sup>73</sup>	
A. 해운 부수 서비스 <sup>74</sup> a) 해운화물취급서비스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통관서비스 d)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e) 해운대리업서비스 f)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p>오,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예, 핀, 프, 그, 크, 형, 아, 이, 리, 륙,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이 : 해운화물취급서비스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sup>75</sup>가 있음. 주요 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역적 산포 및 새로운 고용 창출</p> <p>불 : 직접 지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해운대리업서비스에 대하여, 대한민국 해운회사는 그 주사무소를 위한 대리점으로 활동할 지점 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가짐. 선박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해운 부수 서비스는 불가리아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음.</p> <p>베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p> <p>핀 : 핀란드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p> <p>크 : c)통관서비스, d)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e) 해운대리업서비스 및 f)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a)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b)창고업 서비스, j)기타 지원 및 부수서비스(케이터링 포함), h)예선서비스와 i)해상운송 지원 서비스에 관하여: 외국법인의 경우 크로아티아에 회사 설립이 요구되고 경쟁입찰 절차에 따라서 항만 관리청에 의하여 양허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항만 용적 제한을 반영하여 제한될 수 있음.</p>

<sup>73</sup> 사업서비스의 6.F.1)1.부터 6.F.1)4 에 기재된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sup>74</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항만서비스,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부수서비스 및 예선서비스에 적용됨.

<sup>75</sup> 이 조치는 비차별적으로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g) 선원포함 선박임대 (CPC 7213)	
h) 예선서비스 (CPC 7214)	
i) 해상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5의 일부)	
j)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케이터링 포함) (CPC 749의 일부)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내수운송 부수 서비스 <sup>76</sup>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유 : 기존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라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된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와 관련한 국적조건을 충족하는 운영자를 위하여 운항권 일부를 유보함. 라인강 운송에 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을 조건으로 함.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오 : 자연인이 해운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법인이 설립하는 경우, 경영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국적 조건이 있음. 오스트리아에 해운회사로 등록 또는 상시 설립이 요구됨. 아울러, 사업주식 과반수를 유럽연합 시민이 보유해야 함. 단, 창고업, 화물운송대리업, 선적 전 조사는 제외
d) 선원포함 선박임대 (CPC 7223)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참여는 49퍼센트로 제한됨.
e) 예선서비스 (CPC 7224)	형 : 설립시 국가의 참여가 요구될 수 있음. 창고업서비스는 제외
f) 내수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5의 일부)	핀 : 핀란드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g)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베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크 : 약속 안함.

<sup>76</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항만서비스,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부수 서비스 및 예선서비스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C.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sup>77</sup></b>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해서 약속 안함(법인화 필요).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는 49퍼센트로 제한됨.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베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크 : 예선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화물입환서비스 (CPC 7113)	
e) 철도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3)	
f)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sup>77</sup> 공역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D. 도로운송 부수 서비스<sup>78</sup></b>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운영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 (CPC 7124) e) 도로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4) f)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p>오 : 운영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에 대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내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법인에만 인가가 부여될 수 있음.</p> <p>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는 49퍼센트로 제한됨.</p> <p>핀 : 운영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에 대해서 인가가 요구되나, 외국에 등록된 운송수단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p> <p>베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p> <p>크 : 운영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에 대하여 약속 안함.</p>

---

<sup>78</sup> 공역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E.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	
a) 지상조업서비스 (케이터링 포함)	<p><b>유</b> : 내국민대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활동의 분류는 공항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각 공항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가용 공간의 제약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이유로는 2개 이상의 공급자로 제한될 수 있음.</p> <p><b>불</b>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p> <p><b>크</b> : 약속 안함.</p>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p><b>불</b>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p> <p><b>풀</b> : 냉동 또는 냉장 물품 및 액체 또는 가스 벌크보관서비스에 대해서, 활동의 분류는 공항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각 공항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가용 공간의 제약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이유로는 2개 이상의 공급자로 제한될 수 있음.</p>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p><b>사, 체, 형, 물, 풀, 루, 슬</b> : 약속 안함.</p> <p><b>불</b> : 외국인은 49퍼센트 지분 제한 조건하에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그리고 지점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p> <p><b>베</b>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p>
d) 송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CPC 734)	<p><b>유</b> : 유럽연합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되어야 함. 또는 만약 면허를 부여하는 회원국이 허용하는 경우는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도 됨.</p> <p>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될 수 있음.</p> <p>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항공사가 운영해야 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e) 판매 및 마케팅 f) 컴퓨터 예약시스템	<p><b>유</b> : 유럽연합 항공사가 유럽연합 내에서 제공받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sup>79</sup>를 대한민국에 있는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유럽연합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가 유럽연합 내에서 받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각각 유럽연합 내의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 공급자가 대한민국의 항공사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또는 유럽연합 항공사가 대한민국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p> <p><b>불</b>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p>
F. 연료 외의 물품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 <sup>80</sup>	제한 없음.
a) 파이프라인에 의해 운송되는 연료 외의 상품의 창고업서비스 <sup>81</sup> (CPC 742의 일부)	
18. 기타 운송서비스	
복합운송서비스 제공	<p>오, 불, 사, 체, 에, 크, 형, 리, 라, 몰, 폴, 루, 스, 베, 슬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제한 없음. 각 운송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이 약속목록에 명기된 제한을 저해하지 아니함.</p> <p>오, 불, 사, 체, 에, 크, 형, 리, 라, 몰, 폴, 루, 스, 베, 슬 : 약속 안함.</p>

<sup>79</sup> “동등한 대우”라 함은 유럽연합 항공사 및 유럽연합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를 비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함.

<sup>80</sup>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C에 기재됨.

<sup>81</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9. 에너지서비스	
A. 광업 부수 서비스 <sup>82</sup> (CPC 883 <sup>83</sup> )	제한 없음.
B. 연료 파이프라인 운송 <sup>84</sup> (CPC 7131)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예, 핀, 프, 그, 아, 이, 라, 륙,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C.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연료 창고업 <sup>85</sup> (CPC 742의 일부)	폴 : 에너지 공급국의 투자자는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음.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sup>82</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sup>83</sup>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함: 광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지상 준비, 지상 장비 설치, 드릴링, 드릴링빗 서비스, 케이싱 및 도관서비스, 머드 제조 및 공급, 고체물질 관리, 피싱 및 하향공 특수작업, 유정지 지질 및 드릴링 통제, 코어 채취, 유정 검사, 와이어선서비스, 끝처리 액(염수) 공급 및 작업, 끝처리 기구 공급 및 설치, 시멘트 (프레스 펌핑), 스티뮬레이션 서비스(파쇄, 산성 물질 처리 및 프레스 펌핑), 개수 및 유정 보수 서비스 그리고 유정 충전 및 폐쇄 천연자원에 대한 직접 접근 또는 이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기재된 석유 및 가스 외의 자원 채굴을 위한 지상 준비 작업(CPC 5115)은 포함하지 아니함.

<sup>84</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sup>85</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고체, 액체 및 기체 연료와 관련 제품의 도매서비스 (CPC 62271) 그리고 전기, 증기 및 온수 도매서비스 <sup>86</sup>	유 : 전기, 증기 및 온수의 도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E. 자동차연료 소매서비스 (CPC 613) F. 연료용 유류, 용기에 담긴 가스, 석탄 및 목재의 소매판매 (CPC 63297) 그리고 전기, (용기에 담기지 않은) 가스, 증기 및 온수 소매서비스 <sup>87</sup>	유 : 자동차연료, 전기, (용기에 담기지 않은) 가스, 증기 및 온수의 소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벨, 불, 텐, 뜨, 이, 물, 포 : 연료용 유류, 용기에 담긴 가스, 석탄 및 목재의 소매서비스에 대해서 백화점(프의 경우 대형 매장에 대해서만)에 대한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기존 매장에 수와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역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및 새로운 고용 창출
G. 에너지유통 부수 서비스 <sup>88</sup> (CPC 887)	오, 벨, 불, 사, 체, 독, 텐, 서, 예, 편, 뜨, 그, 아, 형, 이, 륙, 리, 물, 네, 폴, 포, 루, 슬, 스, 영 : 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그리고 컨설팅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베 : 가스유통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가스 유통에 대하여 제한 없음.

<sup>86</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sup>87</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sup>88</sup> 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20. 기타 서비스	
a) 세탁 및 염색 서비스 (CPC 9701)	제한 없음.
b) 머리미용서비스 (CPC 97021)	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근거하여 적용됨. 적용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는 기업의 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
c) 화장,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서비스 (CPC 97022)	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근거하여 적용됨. 적용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는 기업의 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
d)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미장서비스 (CPC 97029)	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기반하여 적용됨. 적용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는 기업의 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e)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육체적 휴식복지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는 스파서비스 및 비의료요법 마사지 <sup>8990</sup> (CPC ver. 1.0 97230)	제한 없음.
f) 통신연결서비스 (CPC 7543)	제한 없음.

---

<sup>89</sup> 의료요법 마사지와 열치료서비스는 6.A.h) 의료서비스 및 치의료 서비스, 6.A.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보건서비스(13.A 및 13.C)에 기재됨.

<sup>90</sup>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일정한 수원지와 같은 공용구역에서 제공되는 스파서비스 및 의료요법이 아닌 마사지에 적용됨.

유럽연합 당사자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  
(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1. 아래의 유보 목록은 제7.7조 및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는 경제활동으로서 제7.18조 및 제7.19조에 따라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에 대해 제한이 적용되는 활동을 표시하고 그러한 제한을 명시한다. 아래의 목록은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가. 제한이 적용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 그리고

나. 적용가능한 제한을 기술하는 두 번째 열

유럽연합 당사자는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지 아니하는(약속 안함으로 남아 있는) 경제활동에서 핵심인력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2.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적시함에 있어

가.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나. CPC란 제7.25조에 대한 각주 27에 언급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그리고

다. CPC 개정판 1.0이란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N° 77, 1998년 발간 CPC 개정판 1.0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3.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에 관한 약속은 그들의 일시 주재의 의도 또는 효과가 노사 분쟁 또는 협상에 개입하거나, 달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조치가 제 7.18조 및 제7.19조의 의미에서의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아래의 목록은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필요,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인정 획득 필요,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필요 및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에 법적 주소를 보유할 필요)는, 비록 아래에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5. 체류기간, 최저임금 및 단체임금협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입국, 체류, 직업 및 사회안전 조치에 관한 유럽연합 당사자의 법과 규정의 모든 요건은 비록 아래에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적용된다.
6. 제7.1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목록은 당사자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에 관한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아래의 목록은 설립에 관한 약속 목록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공공 독점과 배타적 권리의 존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8.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되는 분야에서, 그 주요 기준은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가 공급될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그 지역에서의 관련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9. 아래의 목록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10. 다음 약어는 아래의 목록에서 사용된다.

오 : 오스트리아

벨 : 벨기에

불 : 불가리아

사 : 사이프러스

체 : 체코공화국

독 : 독일

덴 : 덴마크

유 : 회원국 전부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서 : 스페인

에 : 에스토니아

핀 : 핀란드

프 : 프랑스

그 : 그리스

크 : 크로아티아

헝 : 헝가리

아 : 아일랜드

이 : 이탈리아

라 : 라트비아

리 : 리투아니아

룩 : 룩셈부르크

몰 : 몰타

네 : 네덜란드

폴 : 폴란드

포 : 포르투갈

루 : 루마니아

슬 : 슬로바키아

베 : 슬로베니아

스 : 스웨덴

영 : 영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모든 분야	<p><b>경제적 수요 심사</b></p> <p><b>불, 형:</b> 대졸연수생에 대해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됨<sup>1</sup>.</p>
모든 분야	<p><b>기업내 전근자의 범위</b></p> <p><b>불:</b> 기업내 전근자의 수는 각 불가리아 법인에 의해 고용된 유럽연합 시민 수의 연간 평균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100명 미만이 고용된 경우, 기업내 전근자의 수는 인가를 조건으로 총 고용인 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음.</p> <p><b>형:</b> 대한민국의 법인에서 파트너인 자연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p>
모든 분야	<p><b>대졸연수생</b></p> <p><b>오, 독, 서, 프, 형</b>에 대해, 연수는 취득한 학사 학위와 연계되어야 함.</p>
모든 분야	<p><b>경영 이사 및 감사</b></p> <p><b>오:</b> 법인 지점의 경영 이사들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해야 함. 오스트리아 무역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법인 또는 지점 내의 자연인은 오스트리아에 거소를 가지고 있어야 함.</p> <p><b>핀:</b> 민간 기업인으로서 무역을 행하는 외국인은 무역 허가가 필요하고 유럽연합 내에 영주해야 함.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유한회사의 경영 이사에 적용됨.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영 이사가 상시 거주해야 함.</p> <p><b>프:</b> 산업, 상업 또는 기술적 활동의 경영 이사는 거주 허가 보유자가 아닌 경우, 구체적 인가가 필요함.</p> <p><b>루:</b> 상업회사의 감사와 그 대리인의 과반수는 루마니아 시민이어야 함.</p> <p><b>스:</b> 법인 또는 지점의 경영 이사는 스웨덴에 거주해야 함.</p>

<sup>1</sup>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모든 분야	<p>인정</p> <p><b>유:</b> 학위상호인정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은 유럽연합 시민에게만 적용됨.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서 규제되는 전문직서비스 영업을 할 권리는 다른 회원국에서 영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sup>2</sup>.</p>
4. 제조업 <sup>3</sup>	
H.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사업 (ISIC rev. 3.1: 22), 수수료 및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 제외 <sup>4</sup>	<p><b>이:</b> 출판업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크:</b> 출판업자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p> <p><b>풀:</b> 신문 및 잡지의 편집장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스:</b> 출판업자와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p>

<sup>2</sup> 비유럽연합 국가 국민이 그들 자격에 대해 유럽연합 전 지역에 걸치는 자격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 제 7.21 조에 정의된 틀 내에서 협상된 상호인정협정이 필요함.

<sup>3</sup> 이 분야는 사업서비스의 6.F.h)에 기재된 제조업에 부수된 자문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함.

<sup>4</sup> 수수료 및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는 사업서비스의 6.F.p)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6.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861 <sup>5)</sup>	<p>오, 사, 서, 그, 리, 몰, 류, 슬: (유럽연합 및 회원국) 국내법 업무를 위해 요구되는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스페인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를 부여할 수 있음.</p> <p>벨, 핀: 법률대리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거주요건과 함께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벨기에에서 비형사사건에서 “최고법원(Cour de cassation)”에서 대리하는 데에는 쿼터를 조건으로 함.</p> <p>크 : 법률대리서비스를 위하여 요구되는 변호사 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크로아티아 시민권과, 유럽연합 가입 시,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권).</p>

<sup>5</sup> 법률자문서비스, 법률대리서비스, 법적 중재 및 화해/조정 서비스, 그리고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를 포함함.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국제공법, 유럽연합법 및 서비스공급자 또는 그 소속직원이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관할 지역의 법과 관련해서만 인정됨. 그리고 다른 서비스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 가능한 면허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함. 국제공법 및 외국법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이러한 면허 요건 및 절차는 특히 국내 윤리규정의 준수, (활동국 직명에 대한 인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원자격국 직명의 사용, 보험 요건,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단순 등록 또는 적성검사를 통한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간이 가입, 활동국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주소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유럽연합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의 관련 회원국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법정 및 기타 유럽연합 측의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및 국내 절차법 사무 처리를 수반하기 때문임.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경우 변호사협회에 완전히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 변호사가, 그 변호사가 활동하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국민 또는 그 국가에 속하는 의뢰인을 민사절차에서 대리하는 것이 허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공중, “집행관 업무( <i>huissiers de justice</i> )” 또는 다른 “공무원 업무( <i>officiers publics et ministeriels</i> )”와 같이 공공의 기능을 위임받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법률자문,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는 제외	<p><b>불:</b> 대한민국 변호사는 상호주의 및 불가리아 변호사와의 협력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률대리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음. 법률조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주가 요구됨.</p> <p><b>프:</b> “최고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e la Cour de Cassation</i>)”와 “헌법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u Conseil d'Etat</i>)”의 직종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은 쿼터와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p> <p><b>헝:</b>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거주요건과 함께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외국 변호사에 대해 법적 활동의 범위는 법률자문의 제공에 한정되며, 이러한 법률자문은 형가리 변호사 또는 법무회사와 체결된 협력계약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함.</p> <p><b>라:</b> 형사 절차에서의 법률대리권이 유보된, 서약한 사무변호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덴:</b> 법률자문서비스의 마케팅은 덴마크 자격증을 지닌 변호사에 제한됨. 덴마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덴마크 법률시험에 요구됨.</p> <p><b>룩:</b> 룩셈부르크 및 유럽연합 법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국적조건이 있음.</p> <p><b>스:</b> 스웨덴의 변호사 직명 “소송자격이 있는 변호사(<i>advokat</i>)”의 사용만을 위하여 필요한 변호사협회에의 가입은 거주요건을 조건으로 함.</p>
b) 1. 회계 및 회계장부정리 서비스 (감사서비스를 제외한 CPC 86212, CPC 86213, CPC 86219 및 CPC 86220)	<p><b>프:</b> 회계 및 회계장부정리 서비스의 제공은 외교부 장관과의 합의에서 경제금융산업 장관의 결정을 조건으로 함. 거주요건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2. 감사서비스 (CPC 86211 및 회계서비스를 제외한 CPC 86212)	<p><b>오:</b>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그리고 특정한 오스트리아법(예: 합자주식회사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에 규정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적조건이 있음.</p> <p><b>덴:</b> 거주요건이 있음.</p> <p><b>서:</b> 법정 감사인에 대하여, 그리고 회사법에 관한 제8차 유럽경제공동체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의 관리자, 이사 및 파트너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핀:</b> 핀란드 책임회사의 감사인 중 최소 1인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p> <p><b>크:</b> 크로아티아 감사 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인 감사만이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p> <p><b>그:</b> 법정 감사인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이:</b> 회사법에 관한 제8차 유럽경제공동체 지침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의 관리자, 이사 및 파트너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개별 감사인에 대해서도 거주요건이 있음.</p> <p><b>스:</b> 스웨덴에서 승인된 감사인만이 일정한 법적 실체, 특히 모든 유한회사에서 법적 감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 승인을 위해 거주가 요구됨.</p>
c) 세무자문서비스 (CPC 863 <sup>6)</sup> )	<p><b>오:</b>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국적조건이 있음.</p> <p><b>불, 베:</b> 전문가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헝:</b> 거주요건이 있음.</p>

<sup>6</sup> 6.A.a) 법률서비스에 기재된 세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건축설계서비스 및 e)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1 및 CPC 8674)	<p>에: 최소 1인의 책임자(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컨설턴트)가 에스토니아에 거주해야 함.</p> <p>불: 외국인인 전문가는 건설 분야에서 최소 2년간 경험이 있어야 함.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p> <p>그, 크, 형, 슬: 거주요건이 있음.</p>
f)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g)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및 CPC 8673)	<p>에: 최소 1인의 책임자(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컨설턴트)가 에스토니아에 거주해야 함.</p> <p>불: 외국인인 전문가는 건설 분야에서 최소 2년간 경험이 있어야 함.</p> <p>크, 슬: 거주요건이 있음.</p> <p>그, 형: 거주요건이 있음.(CPC 8673의 거주요건은 대졸연수생에게만 적용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분야 또는 하위 분야
h) 의료서비스(심리학자 포함) 및 치의료 서비스 (CPC 9312 및 CPC 85201의 일부)	<p>체, 이, 슬: 거주요건이 있음.</p> <p>체, 루, 슬: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p> <p>벨, 륙: 대졸연수생의 경우,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p> <p>불, 몰: 국적조건이 있음.</p> <p>독: 공공의 보건상 이익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국적조건이 있음.</p> <p>덴: 구체적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제한된 인가가 18개월까지 부여될 수 있고 거주가 요구됨.</p> <p>프: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연간 설정된 쿼터 내에서 접근이 가능함.</p> <p>크: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인은 직능단체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p> <p>라: 외국인에 의한 의료 업무를 위해 일정 지역에서의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한 경제적 수요에 근거한 지방보건 당국으로부터의 허가가 요구됨.</p> <p>풀: 외국인에 의한 의료 업무를 위해 허가가 요구됨. 외국인 의사는 직능 단체 내에서 제한된 선거권을 가짐.</p> <p>포: 심리학자에 대해 거주요건이 있음.</p>
i) 수의료서비스 (CPC 932)	<p>불, 독, 그, 프, 크, 형: 국적조건이 있음.</p> <p>체 및 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p> <p>이: 거주요건이 있음.</p> <p>풀: 국적조건이 있음. 외국인은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j) 1. 조산원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p><b>오:</b> 오스트리아에서 전문직 개업을 하기 위해, 해당 인은 해당 직종에서 설립 전에 최소 3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함.</p> <p><b>벨, 륙:</b> 대졸연수생의 경우,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p> <p><b>사, 예, 루:</b>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p> <p><b>프:</b>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연간 설정된 퀴터 내에서 접근이 가능함.</p> <p><b>크 :</b>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인은 직능단체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p> <p><b>이:</b> 거주요건이 있음.</p> <p><b>라:</b> 일정 지역에서의 조산원 총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적 수요 조건에 따라 지방보건당국이 인가함.</p> <p><b>풀:</b> 국적조건이 있음. 외국인은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p>
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p><b>오:</b>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활동만 허용됨.: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실존분석적 정신요법사, 식이요법사 및 영양사. 오스트리아에서 전문직 개업을 하기 위해, 해당 인은 해당 직종에서 설립 전에 최소 3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함.</p> <p><b>벨, 프, 륙:</b> 대졸연수생의 경우,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p> <p><b>사, 체, 예, 루, 슬:</b>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p> <p><b>크 :</b>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인은 직능단체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p> <p><b>헝:</b> 국적조건이 있음.</p> <p><b>덴:</b>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한된 인가가 18개월 까지 부여될 수 있고 거주가 요구됨.</p> <p><b>사, 체, 그, 이:</b>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결정은 지역적 결원 및 부족을 조건으로 함.</p> <p><b>라:</b> 일정 지역에서의 간호사 총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적 수요의 조건에 따라 지방보건당국이 인가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k) 의약품 소매 및 의료·정형외과 상품 소매 (CPC 63211) 약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sup>7</sup>	프: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설정된 쿼터 내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프랑스의 약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접근이 가능함. 독, 그, 슬: 국적조건이 있음. 헝: 의약품 소매 및 의료·정형외과 상품 소매(CPC 63211)를 제외하고 국적조건이 있음. 이, 포: 거주요건이 있음.
D. 부동산서비스 <sup>8</sup>	
a) 자가 또는 임차 재산 관련 (CPC 821)	프, 헝, 이, 포: 거주요건이 있음. 라, 몰, 베: 국적조건이 있음.
b)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 (CPC 822)	덴: 달리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에 의해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요건이 있음. 프, 헝, 이, 포: 거주요건이 있음. 라, 몰, 베: 국적조건이 있음.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e) 개인·가정물품 관련 (CPC 832)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sup>7</sup> 기타 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일반대중에 대한 의약품의 공급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면허 및 자격 요건과 절차를 조건으로 함. 일반적으로 이 활동은 약사에게 유보됨.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처방약의 공급만이 약사에게 유보되어 있음.

<sup>8</sup> 관련 서비스는 부동산 대리인 직종과 관련되며, 자연인 및 법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모든 권리 및/또는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f) 통신장비임대 (CPC 7541)	유: 전문가 및 대출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F. 그 밖의 사업서비스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이, 포: 생물학자 및 화학분석가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f) 농업, 수협업, 임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1의 일부)	이: 농경제학자 및 “농업기술자( <i>periti agrari</i> )”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j) 2. 경비서비스 (CPC 87302, CPC 87303, CPC 87304 및 CPC 87305)	<p>벨: 경영 인력에 대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p> <p>불, 사, 체, 애, 라, 리, 몰, 폴, 루, 베, 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p> <p>덴: 경영자 및 공항수워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p> <p>서, 포: 전문 인력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프: 경영 이사 및 이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이: 경비서비스 및 귀중품 운송을 위해 필요한 인가를 얻기 위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k) 과학·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CPC 8675)	<p><b>불:</b> 전문가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독:</b> 공적으로 지명된 조사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프:</b> 재산권 설립 및 토지법과 관련된 “조사” 활동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이, 포:</b> 거주요건이 있음.</p>
I) 1. 선박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b>몰:</b> 국적조건이 있음.
I) 2. 철도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b>라:</b> 국적조건이 있음.
I) 3.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 차량 및 도로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6112, CPC 6122, CPC 8867의 일부 및 CPC 8868의 일부)	<b>유:</b>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 차량 유지 및 보수에 대하여,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i) 5. 금속제품, (비)사무용) 기계, (비)운송 및 비사무용) 장비 및 개인·가정물품 유지 및 보 수 서비스 <sup>9</sup>  (CPC 633, CPC 7545, CPC 8861, CPC 88 62, CPC 8864, CPC 8865 및 CPC 8866)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다음은 제외: CPC 633, 8861, 8866에 대해, 벨, 독, 덴, 서, 프, 그, 형, 아, 이, 룩, 몰, 네, 폴, 포, 루, 스, 영 개인·가정물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보석류 제외)에 대해, 불: CPC 63301, 63302, 63303의 일부, 63304, 63309 CPC 633, 8861-8866에 대해, 오 CPC 633, 8861-8866에 대해, 예, 핀, 라, 리 CPC 633, 8861-8865에 대해, 체, 슬 CPC 633, 8861, 8866에 대해, 베
m) 빌딩청소서비스  (CPC 874)	사, 예, 크, 몰, 폴, 루, 베: 전문가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n) 사진서비스  (CPC 875)	크, 라: 전문사진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폴: 항공사진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p) 인쇄 및 출판  (CPC 88442)	스: 출판업자 및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크: 출판업자에 대한 거주요건이 있음.
q) 국제회의서비스  (CPC 87909의 일부)	베: 국적조건이 있음.

<sup>9</sup>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6112, 6122, 8867, 및 8868)는 6.F.1)1.부터 6.F.1)4.까지에 기재됨.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기 및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845)는 6.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r) 1.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핀: 공인 번역사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덴: 달리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에 의해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공인 번역사 및 통역사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r) 3. 수금대리서비스 (CPC 87902)	벨, 그, 이: 국적조건이 있음.
r) 4. 신용조사서비스 (CPC 87901)	벨, 그, 이: 국적조건이 있음.
r) 5. 복제서비스 (CPC 87904 <sup>10</sup> )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CPC 511, CPC 512, CPC 513, CPC 514, CPC 515, CPC 516, CPC 517 및 CPC 518)	불: 외국인인 전문가는 건설 분야에서 최소 2년의 경험이 있어야 함.

<sup>10</sup> CPC 88442에 해당하며 6.F.p)에 기재된 인쇄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9. 유통서비스</b> (무기, 총포탄, 전쟁물자의 유통은 제외)	
<b>C. 소매서비스<sup>11</sup></b>	
<b>c) 식품 소매서비스</b> (CPC 631)	<b>프:</b> 담배판매자(즉, buraliste)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10. 교육서비스</b>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b>A. 초등교육서비스</b> (CPC 921)	<b>프:</b>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교육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를 얻을 수 있음. <b>이:</b> 국가 공인 졸업장을 발행하는 서비스 공급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그:</b> 교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B. 중등교육서비스</b> (CPC 922)	<b>프:</b>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교육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를 얻을 수 있음. <b>이:</b> 국가 공인 졸업장을 발행하는 서비스 공급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그:</b> 교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라:</b> 장애학생을 위한 기술 및 직업 중등학교형 교육서비스(CPC 9224)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sup>11</sup> 사업서비스의 6.B. 및 6.F.1)에 기재된 유지 및 보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에너지서비스의 19.E. 및 19.F.에 기재된 에너지 제품의 소매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C. 고등교육서비스 (CPC 923)	<p><b>프:</b>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교육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를 얻을 수 있음.</p> <p><b>체, 슬:</b> 중등교육 후 기술 및 직업 교육서비스 (CPC 92310)를 제외한 고등교육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이:</b> 국가 공인 졸업장을 부여하는 서비스 공급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덴:</b> 교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12. 금융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p><b>오:</b> 지점의 경영진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2인의 자연인으로 구성되어야 함.</p> <p><b>에:</b> 직접보험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자본참여를 한 보험 합자주식회사의 경영진에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 보유 비율과 비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영진 구성원의 반을 초과할 수 없음. 현지법인 또는 독립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에스토니아에 영주해야 함.</p> <p><b>서:</b> 보험계리업에 대해 거주요건(또는 그 대체 요건으로 2년의 경험)이 있음.</p> <p><b>이:</b> 보험계리업에 대해 거주요건이 있음.</p> <p><b>크 :</b> 거주요건이 있음.</p> <p><b>핀:</b> 달리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회사의 경영 이사 및 최소 1인의 감사는 유럽연합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 달리 회사가 유럽연합에 본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 보험회사의 총대리인은 핀란드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보험 제외)	<p>불: 집행 이사 및 경영 대리인에 대하여 불가리아에서의 영주가 요구됨.</p> <p>핀: 달리 금융감독당국이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여수신 기관의 경영 이사 및 최소 1인의 감사는 유럽연합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중개인(개인)은 유럽연합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p> <p>이: “금융 판매원(promotori di servizi finanziari)”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 영역 내의 거주요건이 있음.</p> <p>리: 최소 1인의 관리자는 유럽연합의 시민이어야 함.</p> <p>풀: 은행 임원 중 최소 1인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크 : 거주요건이 있음. 경영위원회는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영역에서 신용기관의 사업을 감독함. 경영위원회 위원 중 한 명 이상이 크로아티아어에 능통해야 함.</p>
13. 보건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p>프: 관리 기능에 대한 접근을 위해 인가가 필요함. 인가 시 국내 관리인의 이용가능성이 고려됨.</p> <p>라: 의사, 치과의사, 조산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p> <p>풀: 외국인의 의료 업무에는 인가가 요구됨. 외국인 의사는 직능 단체 내에서 제한된 선거권을 가짐.</p> <p>크 :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인은 직능단체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4.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CPC 641, CPC 642 및 CPC 643)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제외 <sup>12</sup>	<p><b>불:</b> 불가리아 회사의 자본 중 공공(국가 및/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관리자의 수는 불가리아 시민권자인 관리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함.</p> <p><b>크:</b> 가정집 및 전원주택의 접객서비스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p>
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여행매니저 포함) (CPC 7471)	<p><b>불:</b> 불가리아 회사의 자본 중 공공(국가 및/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관리자의 수는 불가리아 시민권자인 관리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함.</p> <p><b>크:</b> 사무실 관리자 직위에 대한 관광청의 승인이 있어야 함.</p>
C. 관광안내서비스 (CPC 7472)	불, 사, 서, 프, 그, 크, 형, 이, 리, 몰, 풀, 포, 슬: 국적조건이 있음.
15.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제외)	
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극장, 라이브밴드, 서비스 및 디스코텍 포함) (CPC 9619)	<p><b>프:</b> 관리 기능에 대한 접근을 위해 인가가 필요함. 2년을 초과하는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인가는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p>

<sup>12</sup>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운송 부수 서비스 중 17.E.a)의 지상조업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16. 운송서비스	
A. 해상운송	
a) 국제여객운송 (국가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1)	유: 선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오: 경영 이사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 국제화물운송 (국가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2)	
D. 도로운송	
a) 여객운송 (CPC 7121 및 CPC 7122)	오: 법인 또는 파트너쉽을 대표할 자격 있는 자 및 주식보유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텐, 크: 관리자에 대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불, 몰: 국적조건이 있음.
b) 화물운송 (CPC 7123,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운송은 제외 <sup>13)</sup> )	오: 법인 또는 파트너쉽을 대표할 자격 있는 자 및 주식보유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불, 몰: 국적조건이 있음. 크: 관리자에 대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sup>13</sup> CPC 71235 의 일부로서 통신서비스 중 7.A.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E. 연료 외의 상품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 <sup>14</sup> (CPC 7139)	오: 경영 이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7. 운송 부수 서비스 <sup>15</sup>	
A. 해운 부수 서비스 a) 해운화물취급서비스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통관서비스 d)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e) 해운대리업서비스	오: 경영 이사의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불, 몰: 국적조건이 있음. 덴: 통관서비스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그: 통관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이: “특허 해운대리업자( <i>raccordatario marittimo</i> )”에 대해 거주요건이 있음.

<sup>14</sup>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B에 기재됨.

<sup>15</sup> 사업서비스의 6.F.1)1부터 6.F.1)4에 기재된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f)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g) 선원포함 선박임대 (CPC 7213) h) 예선서비스 (CPC 7214) i) 해상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5의 일부) j)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케이터링 제외) (CPC 749의 일부)	
D. 도로운송 부수 서비스 d) 운영자 포함 상업 도로차량 임대 (CPC 7124)	오: 법인 또는 파트너쉽을 대표할 자격 있는 자 및 주식보유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불, 물: 국적조건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F. 연료 외의 상품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 <sup>16</sup>	오: 경영 이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a) 파이프라인에 의해 운송되는 연료 외의 상품의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19. 에너지서비스	
A.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sup>17</sup> )	슬: 거주요건이 있음.
20. 기타 서비스	
a) 세탁 및 염색서비스 (CPC 9701)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sup>16</sup>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C에 기재됨.

<sup>17</sup>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함: 광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지상 준비, 지상 장비 설치, 드릴링, 드릴빗서비스, 케이싱 및 도관서비스, 머드 제조 및 공급, 고체물질 관리, 퍼싱 및 하향공 특수작업, 유정지 지질 및 드릴링 통제, 코어 채취, 유정 검사, 와이어선서비스, 끌처리액(염수) 공급 및 작업, 끌처리기구 공급 및 설치, 시멘트(프레스 펌핑), 스티뮬레이션 서비스(파쇄, 산성물질 처리 및 프레스 펌핑), 개수 및 유정 보수 서비스, 유정 충전 및 폐쇄 천연자원에 대한 직접 접근 또는 이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기재된 석유 및 가스 외의 자원 채굴을 위한 지상 준비 작업(CPC 5115)은 포함하지 아니함.

<b>분야 또는 하위 분야</b>	<b>유보 사항의 기술</b>
b) 머리미용서비스 (CPC 97021)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c) 화장,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서비스 (CPC 97022)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d) 기타 미장서비스 (CPC 97029)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e)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육체적 휴식 복지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는 스 파서비스 및 비의료요법 마사지 <sup>18</sup> (CPC ver. 1.0 97230)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

<sup>18</sup> 의료요법 마사지와 열치료서비스는 6.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6.A.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보건서비스(13.A 및 13.C)에 기재됨.

부속서5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유럽연합 당사자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 모든 분야	<p>유럽연합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정 규정, 즉 유럽연합이 어떠한 조치의 개정이 그러한 경제통합 협정에서의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에 대하여 그 개정직전에 존재하였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그 조치를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부터 도출된 차등대우를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p>	모든 국가	무기한	역진방지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차등적인 대우를 보호하기 위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 도로운송	루마니아에서,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들에 등록된 운송수단이 상품 및/또는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허가는 기준 또는 미래의 양자 간 도로 협정에 따름. 도로내륙운송은 국내에 등록된 운송수단에 유보됨.	오스트리아, 알바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덴마크, 스위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이란, 독일, 그리스, 툭셈부르크,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슬로바키아, 시리아, 슬로베니아, 터키, 헝가리 및 향후 다른 국가도 가능	무기한	예외의 필요성은 도로운송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 대한 지역적 특수성과 연관됨.
3. 철도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준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의 영역 내 그리고 관련 국가 간의 운수권, 운영조건 및 운송서비스 제공을 규제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철도운송 기반시설 및 환경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체코공화국 및 슬로바키아 영역 내 그리고 관련 국가 간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4.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p>공동체/유럽연합 또는 그 회원국과 제3국가 간 체결된 (복합 운송 - 도로/철도 포함) 국제도로운임 및 여객운송에 관한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의 다음에 대한 규정</p> <p>(a)- 체약당사자 간 또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지나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각 체약당사자에 등록된 운송수단에 유보하거나 제한<sup>1</sup> 또는</p> <p>(b)- 그러한 운송수단에 대한 조세 면제</p>	스위스, 중유럽, 동유럽 및 남동유럽 국가와 독립국가연합의 모든 회원국, 알바니아, 터키,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튜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쿠웨이트	무기한	예외의 필요성은 도로운송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의 지역적 특성과 연관됨.

<sup>1</sup> 오스트리아에 대하여, 운수권에 관한 최혜국대우 면제 부분은 도로운송에 관한 양자협정 또는 도로운송과 관련된 그 밖의 약정이 존재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국가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5.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운송	기준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체코공화국으로의 운송서비스, 체코공화국에서의 운송서비스, 체코공화국을 통과하는 운송서비스 그리고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관련 협약 당사자로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운송서비스 공급을 유보하거나 제한하고 운영조건을 명시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철도운송 기반시설 및 환경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체코공화국 영역 내 그리고 관련 국가 간에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6.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핀란드에서 내륙운송 (복합운송, 도로 및 철도 포함)을 유보한 국제도로운송에 관한 기준 또는 미래의 상호 양자간 및 복수국간 협정의 규정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 협정이 발효 중인 모든 국가	무기한	도로운송서비스의 지역적 특수성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7.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오스트리아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들에 등록된 자동차로 외국 기업가들이 수행하는 국제여객 운송으로 제한됨.	구 유고슬라비아 승계국들, 스위스 그리고 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승계국 (발트3국,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및 우즈베키스탄 제외)	무기한	상호주의 및 국제여행 발전의 촉진
8. 도로운송서비스 - 여객 및 화물	사실상의 상호주의를 근거로 한 일정한 조건에 따른 오스트리아에서의 운송수단에 대한 조세 면제는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에 등록된 운송수단으로 제한됨.	이스라엘, 모나코, 산마리노, 터키, 교황청 그리고 미국	무기한	상호주의 및 국제여행 및/또는 국제상품 운송 발전의 촉진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9.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양자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운송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고 리투아니아 영역으로의 운송서비스, 리투아니아 영역을 통한 운송서비스 그리고 리투아니아 영역으로부터 관련 체약당사자로의 운송서비스, 양자간 통과허가 및 그 밖의 운송허가를 포함하여 운영조건, 도로세 및 부과금을 명시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운송 기반시설 및 환경을 보호하고 리투아니아 영역 및 관련 국가 간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10.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그 불가리아 영역에서의 또는 불가리아 국경을 지나는,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이러한 종류의 운송서비스 공급을 제한 및/또는 유보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환경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불가리아 영역 및 관련 국가 간 운수권의 규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1. 해상운송을 제외한 모든 여객 및 화물운송 서비스	폴란드: 관련 국가들의 공급자들이, 관련 국가의 영역에서, 관련 국가의 영역으로, 그리고 관련 국가의 영역을 통과하는 운송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상호주의 요건	모든 국가	무기한	운송협력(또는 유사한 성격의 것),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증진과 보호 및 특히 양자적으로 합의된 허가체제로부터 발생하는 운송 쿼터를 이행하는 것에 관한 기준 및 미래의 상호적 협정의 체제
12.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슬로바키아로의 운송서비스, 슬로바키아에서의 운송서비스, 슬로바키아를 통과하는 운송서비스 그리고 슬로바키아로부터 관련 체약당사자로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또는 특혜도로세를 포함하여 운송서비스 공급을 유보하거나 제한하고 운영조건을 명시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도로운송 기반시설의 무결성과 환경을 보호하고 슬로바키아 영역 및 관련 국가 간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3. 도로운송 - 화물 (CPC 7123)	스페인에서의 상업적 주재의 설립을 위한 인가는, 스페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시장 접근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거절될 수 있음.	모든 국가	무기한	스페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실효적인 시장 접근 및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필요
14. 도로운송 - 여객 및 화물	국제 도로 운송에 관한 기준 또는 미래의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로서, 크로아티아로의 운송서비스, 크로아티아에서의 운송서비스, 크로아티아를 통과하는 운송서비스 그리고 크로아티아로부터 관련 당사자로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통과허가 및/ 또는 특혜 도로세를 포함하여 운송서비스 공급을 유보하거나 제한하고 운영조건을 명시하는 조치	크로아티아가 도로운송에 관한 협정을 발효중인 모든 국가	무기한	예외의 필요성은 도로운송서비스의 지역적 특성과 크로아티아 영역내 및 영역을 지나는 그리고 크로아티아와 관련국 간의 운수권을 규제할 필요성과 연관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5.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 (a)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b)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c) 컴퓨터예약시스템(CRS)서비스, 그리고 (d) 지상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서비스 및 공항운영서비스와 같은 항공운송서비스에 부수적인 그 밖의 서비스	시행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서명되는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게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모든 국가	무기한	기존 및 미래의 국제협정을 보호를 위해 요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6. 항공운송서비스의 컴퓨터예약시스템과 판매 및 마케팅	<p>규정(EEC) 제3089/93호에 의해 개정된, 규정(EEC) 제2299/89호의 제7조에 따라, 이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동등한 대우가 그 국가에서 유럽연합 당사자 컴퓨터예약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 및 참여 항공사에게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컴퓨터예약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 항공사 및 참여 항공사의 의무가 그 국가의 컴퓨터예약 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 및 참여 항공사에게 적용되지 아니함.</p>	컴퓨터예약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가 소재하는 모든 국가	무기한	컴퓨터예약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다자적으로 합의된 규칙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의 필요성
17.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내 상품과 관련한 서비스를 포함한 항만 내 화물취급서비스와 보관, 창고 서비스	<p>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는 상호주의를 근거로, 그리고 관련 국가와의 양자 협정에 따라 불가리아에 의해 부여됨.</p>	모든 국가	무기한	그러한 조치의 적용 목적은 그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불가리아 공급자에 대해 그 밖의 국가의 시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18. 내수운송	내륙수로에의 접근에 관한 기준 또는 미래의 협정(라인-마인-다뉴브 연결 협정을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에 관한 국적기준을 충족시키는 운영자를 위해 운수권을 유보하는 조치	스위스, 중유럽, 동유럽 및 남동유럽 국가와 독립국가 연합의 모든 회원국	무기한 일정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경제통합협정이 체결되거나 완성될 때까지만 예외가 요구됨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륙수로에 대한 운송 능력을 규제하기 위함.
19. 내수운송	라인강 화물운송에 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 <sup>2</sup>	스위스	무기한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륙수로에 대한 운송 능력을 규제하기 위함.

<sup>2</sup> 다음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최혜국대우 면제가 적용된다 :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0. 내수운송 - 여객 및 화물	오스트리아에서, (a) 일정한 운수권은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선박을 위하여 유보됨(소유에 관한 국적 요건), 그리고 (b)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중명과 면허가 인정됨.	구 유고슬라비아 승계국 그리고 구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승계국	무기한, 그리고 예외는 기존의 조치 및 새로운 조치에 적용됨.	역사적 발전, 그리고 특정한 지역적 측면
21. 내수운송 - 여객 및 화물	기존 그리고 미래의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슬로바키아의 내륙수로에 대한 접근 및 내륙수로에서의 운수권을 외국의 운영자를 위해 유보하는 조치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기반시설의 무결성과 환경을 보호하고 슬로바키아에서의 운수권을 규제하기 위함.
22. 해상운송	부속서 7-가에서 대한민국의 약속을 넘는 조치로서 해운회사의 설립,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조치	특정되지 아니함.	무기한	전반적인 무역관계의 맥락에서의 국제협정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3. 해상운송 - 연안해운	특정된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등록된 선박을 핀란드에서의 연안해운 운영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면제하는 조치로서 핀란드에 의해 취해진, 기존 또는 미래의 상호적 조치	모든 국가	무기한	연안해운의 지역적 특수성
24. 해상운송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등록된 선박을 스웨덴 연안해운 운영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면제하는 조치로서 기존 또는 미래의 협정에 근거한 조치로서 스웨덴에 의해 취해진 상호적 조치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 협정이 발효 중인 모든 국가	무기한	상호 협정에 근거한 연안해운 운수를 규제하기 위함.
25. 선박 관련 운영자 미 포함 임대/리스 (CPC 83103) 선원 포함 선박 임대 (CPC 7213, 7223)	독일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의한 외국선박의 용선계약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	모든 국가	무기한	독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 접근 및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필요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6. 수산	유럽연합은 시행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서명되 는 수산 관련 모든 양자 또는 복수국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 가들에게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 리를 유보함.	모든 국가	무기한	기존 그리고 미래의 양자 및 복수국간 국제 협정의 보호를 위해 요구됨.
27. 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	특히 발틱해 유역에서의 국제 보존 관행 및 정책 또는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폴란드가 우 호적인 수산관계를 가지고 있 는 국가로부터의 서비스 및 서 비스 공급자에 대한 - 관련 국 가들의 어업 관할권 지역에서 의 - 특혜 대우	모든 국가	미정	기존 그리고 미래의 협정뿐만 아니라 관행을 근거로, 특히 발틱해 유역에서의 어업 및 수산 보전에 관한 협력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28. 법률서비스	외국변호사는 법률 지원에 관한 양자 협정에 따라서만 리투아니아 법원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음.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적법성과 책임을 통제할 능력을 보장할 필요
29. 법률서비스	불가리아에서, 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완전한 내국민대우는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에서 설립된 회사 및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시민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특혜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국가	무기한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
30. 보건의료서비스	양자협정이 서명되었거나 미래에 서명될 선택된 국가에서 사이프러스 국민에게 사이프러스에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	의료 협력이 바람직 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무기한	그 조치는 사이프러스와, 사이프러스가 지리적 인접성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제3국과의 양자협정이 존재하거나, 새로운 양자협정을 미래에 서명할 가능성 때문에 필요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31. 의료 및 치과 서비스	불가리아의 영역에서 외국 시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및 치과 서비스와 관한 비용과 지출을 부담하는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급과 보상 계획 및 프로그램은 양자 협정의 틀 내에서 상호주의를 근거로 부여됨.	그러한 양자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국가	무기한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
32. 공공 사회보장서비스	사이프러스와 일정한 국가들 간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양자 협정의 규정	호주, 이집트, 캐나다, 케벡주 및 미래에 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모든 국가	무기한	체약당사자의 사회보장법령의 적용대상이거나 적용대상이 된인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사회보장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함. 특히, 혜택을 받을 자격을 목적으로 체약 당사자에서 보험 또는 거주 기간의 합산을 규정하는 이 협정들은 사이프러스와 노동 이동이 있는 국가들 간에 체결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33. 출판 (CPC 88442의 일부)	이탈리아에서 회사의 자본 및 의결권 49페센트를 초과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모든 국가	무기한	이탈리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 장접근과 동등한 대우 보장 필요
34. 뉴스제공서비스 (CPC 962의 일부)	프랑스어로 된 출판물을 출판 하는 프랑스 회사의 자본 또는 의결권의 20페센트를 초과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모든 국가	무기한	프랑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 접근과 동등한 대우 보장 필요
35. 뉴스제공서비스 (CPC 962의 일부)	프랑스에서의 시장접근. 상호 주의를 조건으로 함.	모든 국가	무기한	프랑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 접근과 동등한 대우 보장 필요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36. 토지 구매	<p>리투아니아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유럽통합 및 그 밖에 리투아니아가 동참하고 있는 통합의 기준을 준수하여 헌법이 지정한 경제적 활동을 리투아니아에서 영위하고 있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내국 실체와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의 외국인 실체들은 그들의 직접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농경지 토지를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취득하는 것이 허용됨. 이와 같은 토지취득 절차, 조건 및 제약은 헌법에 따라 설정됨.</p>	<p>헌법에 따라 결정된 모든 국가:</p> <p>경제협력개발기구<sup>3</sup>,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sup>3</sup>, 및 유럽연합의 준회원국</p>	무기한	리투아니아와 관련 국가들 사이의 큰 경제적 협력을 위하여, 더 우호적인 조건을 조성할 필요

<sup>3</sup> 다만, 이 국가들이 1996년 6월 20일 이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인 경우에 한정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37. 관광안내서비스	리투아니아에서, 외국 관광가이드는 관광안내서비스 지원에 관한 양자협정(또는 계약)에 따라서만 관광안내 서비스를 상호주의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협정(또는 계약)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될 모든 국가	무기한	문화적 정체성의 보존 및 증진
38. 부동산	크로아티아에서, 시민권이 없고 이민 관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의 이주민과 그들의 후손은 제외하고,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요건과 외교부 장관의 승인	모든 국가	임시	정치적 고려와 건설·운영·이전 방식 입장 사유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 기간	예외의 필요를 창설하는 조건
39. 모든 분야	사이프러스 :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와 관련하여 자본의 이동을 포함하여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지역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의 면제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들	무기한	상업적 주재의 점진적 자유화.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 중 일부 국가와의 상호 투자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양자협정이 준비 중임.
40. 모든 분야	노르딕 협력을 증진을 목표로 덴마크, 스웨덴 및 핀란드에 의해 취해진 다음의 조치 (a)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노르딕 산업기금) (b) 국제 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 연구 자금 조달 (프로젝트 수출을 위한 노르딕 기금), 그리고 (c) 환경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sup>4</sup> 에 대한 재정적 지원(노르딕 환경 재정 공사)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	무기한	노르딕 협력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함.

<sup>4</sup> 하나 이상의 노르딕 기업과 협력중인 동유럽 기업들에 적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와의 불일치를 표시하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기간	예외가 필요해지는 조건
41. 모든 분야	<p>폴란드 :</p> <p>부속서 7-가에 포함된 폴란드를 위한 제한을 넘어서는, 다음에 포함된 상업적 주제의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통상 및 항해 조약</li> <li>(b) 사업 및 경제 관계 조약, 그리고</li> <li>(c) 외국인 투자협정의 증진 및 보호</li> </ul>	모든 국가	미정	기존 그리고 미래의 협정의 상호주의 규정
42. 모든 분야	폴란드는 폴란드가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의 강제 중재 절차를 규정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기하거나, 그와 관련된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의 강제적인 중재를 수락함.	모든 국가	미정	외국인 투자의 증진과 보호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제7.8조 및 제7.14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들	예정기간	예외가 필요해지는 조건
43. 모든 분야	상호주의적으로 외국의 자연인 및 법인의 이탈리아에서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허가	모든 국가	무기한	상호주의 요건은 그 밖의 국가에서의 이탈리아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함.
44. 모든 분야	세 번째 열에 기재된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이 포르투갈에서 행하는 일정한 활동 및 직업을 위한 국적 요건의 면제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앙골라, 브라질, 카포베르데,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및 상투메프린시페)	무기한	이 조치는 포르투갈과 이러한 국가들 간의 역사적 연계성을 반영함.
45. 모든 분야	일정한 유럽연합 회원국 <sup>5</sup> 과 관련 국가들 및 공국들 간의 기준 또는 미래의 양자 협정에 근거한 조치로서 자연인과 법인의 설립권을 규정하는 조치	산마리노, 모나코, 안도라, 그리고 교황청	무기한	유럽연합 회원국과 관련 국가들 및 공국들 간의 지리적 상황과 역사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연계성

<sup>5</sup> 다음의 회원국들이 적용대상이 됨: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

## 대한민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최혜국대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1. 모든 분야	<p>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서명된 다음의 분야에 관한 국제협정상 국가들에 대해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수산, 또는</li> <li>(나)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li> </ul>
2. 모든 분야	<p>대한민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경제통합협정에 기재된 특정 규정, 즉 대한민국이 어떠한 조치의 개정이 그러한 경제통합협정에서의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관한 의무에 대하여 그 개정직전에 존재하였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그 조치를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부터 도출된 차등대우를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권리를 유보함.</p>
3.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	<p>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서명된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의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li> <li>(b)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li> <li>(c) 컴퓨터예약시스템(CRS)서비스, 그리고</li> <li>(d) 지상조업서비스,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서비스 및 공항운영서비스와 같은 항공운송서비스에 부수적인 그 밖의 서비스</li> </ul>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최혜국대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4. 취약집단	대한민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나 특혜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5. 사회서비스	대한민국은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범위 내에서 혹은 한도 내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
6. 커뮤니케이션서비스 - 방송서비스	대한민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서비스와 디지털오디오서비스에 대하여,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 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보장과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7.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서비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된 철도운송 분야에 관한 국제협정상 국가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최혜국대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8.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택시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대한민국은 택시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9. 운송서비스 - 도로화물운송서비스(쿠리어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서비스는 제외)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해상운송은 제외)과 쿠리어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은 도로화물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10. 운송서비스 - 내수운송서비스 및 우주운송서비스	대한민국은 내수운송서비스 및 우주운송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최혜국대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11. 교육서비스 -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및 그 밖의 교육	<p>대한민국은 유아·초등·중등교육, 보건·의료 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중등 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에서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및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한 성인 교육은 제외), 그리고 그 밖의 교육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p> <p>이 유보항목은 해외용도를 위한 교육 시험 운영에 적용되지 아니함.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 시험을 선택하고 적용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p>
12. 사회서비스 - 인적보건서비스	<p>대한민국은 인적보건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p> <p>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216호, 2008.12.26.)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9526호, 2009.3.25.)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유사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p>
13. 레크리에이션 문화·스포츠 서비스 - 영화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p>대한민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최혜국대우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의 설명
14.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서비스와 연안해상운송	<p>대한민국은 아래의 조치를 포함한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대한민국 선박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p> <p>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하고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p> <p>연안해상운송은 대한민국선박에 유보되어 있음.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항구간 해상운송을 포함함. 대한민국선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대한민국 정부, 공기업 또는 국토해양부 산하 설립기관이 소유한 선박</li> <li>(b)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li> <li>(c)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li> </ul> <p>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으로서,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 책임자, 회장, 또는 유사한 주요 간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기업 소유의 선박. 1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p>